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좌담회 :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한글서체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1년 9월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엄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7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20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32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43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56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70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5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85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4
-----------------	-----------	----

르쵸

제2, 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95
------------------------	----------------------------	----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106
-------------------------	-------------------	-----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11
----------	----------------------	-----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116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121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124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벌인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 사퇴했다. 배울만큼 배워서 알만큼 알 것 같은 그가 사퇴 회견장에서까지 “과잉복지(?) 망국론”을 들먹였다는 소식을 바다 건너 영국에서 들으면서, ‘누구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사업 동기이다. 영국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는 어린 친구들에게 협동조합을 제대로 가르쳐야한다는 의지로, 영국에 2,000개의 협동조합학교 설립을 목표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2010년인 지난 해 영국협동조합대회에 참여했을 때, 영국의 다양한 협동조합 관련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2010년 말에 140개를 설립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고 부러웠다. 부러움에 이어 “한국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하는 의문이 이어졌다.

최근에 다시 영국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영국에 대해 잘 알고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지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작년의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영국은 고등학교의 설립 여부가 국가의 허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쉬운 일이 아님에는

틀림없지만, 영국에서는 협동조합 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내고 돈을 모으면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영국과는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하며 단순 사대주의적으로 좌절할 일도 아니며, 무조건 가져다가 해본다는 조건불문 이식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일이다. 영국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에서 협동조합학교의 설립 과정과 노하우를 참조한다면, 한국의 조건이 불합리할 경우 그 조건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일을 병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순 모방이 아닌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요즈음 한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호 <생협평론>은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서양을 참조하되 스웨덴 모델이 적합한지, 영국 모델이 적합한지를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의 맥락에서, 한국사회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 고민의 지점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복지의 개념이 장원봉의 지적처럼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조건에서 다시 살펴 만들어낼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핵심 주제이며 특히 모든 협동조합의 과제인 조합원 참여의 문제는 복지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 문제와 구성원의 참여 과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번 호 <생협평론>의 문제의식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협동조합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민을 제안하는 기회로 이번 호 특집을 기획했다. 복지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해외의 구체적인 협동조합들 사례와 아이쿱생협의 선수금 운동을 통해서 협동이 복지사회 구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장하는 글들로 특집이 구성되었다. 정승일이 정리한 것처럼 서구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복지국가운동과 나란히 성장했는데, <생협평론> 4호가 교육운동과 협동조합운동과 복지운동의 상관성을 정리해볼 기회로 역할을 한다면 좋겠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에 협동조합이 논제로 포함된다면 더 좋겠다. 

협동 경제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좌담회 :

-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터 정책위원)

우애와 상호부조의 원리와 보편주의 복지국가

지난 2011년 8월24일 실시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참패로 끝났다. 진보개혁 세력은 한나라당과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론’이 시민들에게 거부된 것이며, 시민들이 ‘보편주의 복지’를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자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선별된 소수 가난한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선별주의 복지라고 한다면, 그런 조사를 생략한 채 모든 대상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보편주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이며, 소득순위 50% 또는 70%까지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그보다 부유한 중상위 50% 또는 상위 50%에게는 급식비를 받는 것(유상급식)은 선별주의라고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공교육 강화도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공교육은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복지 정책을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할 수는 없다. 원리상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주택분야의 경우가 그러한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와 초라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주거보조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주거수당은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인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별주의 복지는 보수, 보편주의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로 오

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적인 자들이 선별주의 복지를 더욱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에산이 고정된 경우,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옳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노동당과 노동조합이 매우 강력했지만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그들 진보세력이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별주의 복지국가를 더욱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초, 중반부터, 민주노동당은(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선별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성이었다.

그렇지만 선별주의 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최소주의’ 복지국가 또는 ‘잔여주의’ 복지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복지혜택의 차원만이 아니라 복지재정, 즉 복지의 비용 부담 차원에서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선별주의 복지의 경우 가장 가난한 자들만이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은 대부분 납세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그 복지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중간 소득층과 상위 소득층이다. 이럴 경우 복지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면서 그 부담은 몽땅 부담해야 하는 중간 및 상위 소득층의 반발(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재원이 모자라는 까닭에 복지 혜택은 최소한의 자격자들 즉, 사회의 ‘나머지’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만 제공된다.

이에 반해 보편주의 복지의 경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에서 모든 이는 ‘평등’하다. 모든 시민 또는 주민은 ‘필요’에 따라 혜택을 분배받을 권리를 지닌다. 또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은 적은대로, 중간 및 상위 소득층은 많은대로, 자신의 소득 대비 누진성의 원칙에 따라 세금(복지비용)을 부담한다. 즉,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민 또는 주민의 소득 및 자산 등 ‘능

력'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한다. 요약하자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제1의 운용 원리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생시몽 등 초기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우애적 협동조합의 원리로서 정초한 것인데,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그것을 지역적 협동조합을 넘어 한 나라 전체의 공동체적 원리(우애와 협동의 원리)로 확대 발전시켰다.

가부장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듣는 말이 “박근혜 도와주려는 거냐?”라는 질문성 힐난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깨닫고 공부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다.

한 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사회복지에 관한 기여(비용)와 혜택(편익)의 차원에서 국가공동체 차원의 상호부조 또는 연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정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박근혜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흉내 내기 힘들다.

서구 역사를 살펴보면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한 복지국가 유형이 있다. 바로 가부장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복지국가이다.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말 실업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가부장주의 복지국가를 선보인 비스마르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처음 탄생한 것은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

그런데 가부장주의 복지국가는 결코 보편주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취업한 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해당 기업주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노동자들 및 그 가족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복지국가를 조합주의 또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이런 복지국가에서는 첫째, 취업하지 못한 가정주부와 청소년, 노인 등은 동등한 사회권(복지권)을 갖지 못하고 배제된다. 둘째, 취업하였더라도 정규직

으로 확고한 직장을 갖지 못했을 경우 이들 역시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된다. 독일은 스웨덴과 달리 오늘날에도 여성의 취업률이 낮고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이 적는데, 이는 독일이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복지국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을 장기간 지배한 기독교 민주당의 보수주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러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역시 기껏해야 이러한 가부장적 복지국가이다. 그런데 코포라티즘적인 복지제도 모델에서는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및 공공부문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등의 사이에 장벽과 배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특정 직종 또는 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복지의 혜택과 비용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 교사 또는 공공부문 직원 등 특정 직종 종사자들만이 -그들끼리의 우애 및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 보편적 복지가 아닌 그들의 직종 또는 직역 특유의 (특정한)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그리고 그들만이 그 비용을 서로 분담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도 -특히 그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경우- 그들만의 독특한 사내 복지 혜택을 그들끼리의 우애 및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렇듯 코포라티즘적 복지제도의 한계는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정신은 지금처럼 특정한 일자리에 국한된 복지, 특히 그들끼리의 우애와 상호부조 중심의 사내 복지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전 국민적인 복지, 전 국민적인 우애와 상호부조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흑자는 말한다.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국가건 아니면 영국과 미국의 선별주의 복지국가건 관계없이 모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기업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라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비인간적인 병폐를 은폐하는 사상누각이 아니냐고, 협동조합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환상이요 거짓이 아니냐고.

그렇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역시 자본주의 기업 및 자본주의 시장과 함께 하고 있다. 한국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있듯 스웨덴에도 볼보자동차와 에릭슨이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종업원을 해고하고 간혹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그렇다면 결국 똑같은 것인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잎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에게는 국가(민주공화국)의 입법으로 보호 받는 강력한 노동권과 산별노조가 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들을 함부로 정리해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전체 종업원의 투표로 선출된 종업원 대표를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인 이사회에 이사(사외이사)의 1/3(독일은 절반)로 참여시키는 ‘공동결정제’법률이 있어, 스웨덴의 기업들이 100% 자본주의가 아니라 51% 자본주의로만 움직이도록 강제한다.

한국 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오직 재벌가문과 주식투자자(소액주주라는 미명 하에) 등 ‘자본’의 대표자들만이 참석한다. 이에 반해 스웨덴 및 독일 기업의 이사회에는 독일은 49%, 스웨덴은 33%의 비율로 종업원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0이다. 이는 스웨덴과 독일 기업의 종업원들이 한국인들에 비해 33배 또는 49배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과 33배 또는 49배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0과 100 사이에 아무런 숫자도 없는 양 말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간혹 0에서 100으로 비약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의 33과 49 등의 숫자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회사 내부의 권력구조만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복지국가에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곧 종업원에 대한 살인이 아니다. 본래 봉급의 80~90%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1년 이상 받을 수 있고, 더구나 국립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공짜로 신규 성장산업으로 이직 또는 전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능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모든 혜택은 바로 ‘국가 전체 차원으로 조직된’우애(형제애)와 협동의 정신, 즉, 연대주의적(solidarish) 복지국가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기주의와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

한민국에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곧 굶주림이요 내팽개침이다. 이러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며 협동조합 원리로 재조직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공염불이란 말인가?

더구나 진정한 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종종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임금 및 저기술에 기생하는 기업과 산업이 고임금과 고기술을 채택한 다른 기업 및 산업과의 시장경쟁(즉 자본주의 시장) 과정에서 탈락하여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산업 구조조정이 에너지 및 생태자연 자원을 더 많이 낭비하던 구기술 및 구산업의 퇴출을 종종 동반하기도 하므로, 생태환경적 관점에서도 유익하다. 예컨대 친환경 모터와 엔진기술을 개발하는데 실패한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되어 구조조정에 처하고 그 종업원들이 해고되는 것은 생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그 종업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자유시장’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바로 그 때 국가적 개입을 통해 생계와 재취업을 형제애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협동조합과 연대적 복지국가의 협력 -스웨덴 협동조합 주택의 사례

그렇지만 연대적 복지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의 신기(神機)는 아니다. 마치 복지국가에서도 대기업과 자본주의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복지국가에서도 협동조합이 필요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주택 부문의 경우, 1970년대 복지국가의 성숙기부터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 부문이 바로 협동조합형 주택들이다. 협동조합형 주택들은 스웨덴에서 자가소유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그것이 특정 주택 분야(대도시의 아파트형 주택)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이 더 높은 효율적 소유형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주택들의 높은 효율성과 인기의 기적 뒤에는 바로 복지국

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보조금이 있다. 즉, 주택 건설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토지를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저렴한 지상권 공여를 통해 제공하고, 건설자재 역시 비영리의 공공주택공사(우리의 LH공사에 해당되는)가 염가로 조달해준다. 또한 막대한 건설자금의 90%까지를 국책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싼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해주고, 협동조합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보유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인기와 성공이 창출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국가적 재정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특유의 지배구조와 상부상조 및 자조의 원리가 없다면 스웨덴의 협동조합 주택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협동조합의 원리가 자본주의 기업의 그것에 비해 훌륭하다 하더라도 만약 위와 같은 다양한 복지국가적 지원과 혜택이 없었다면 스웨덴의 협동조합 주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사유재산제에 의거한 주택(분양주택) 또는 순수한 공적 소유에 의거한 주택(공공임대주택)의 양자만을 고집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택 정책 구상에서도, 사유재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모두 내포한 협동조합형 주택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주택협동조합 시민운동의 발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국회 포함) 및 지자체 차원에서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제공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의 지원 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국가의 성장과 협동조합운동의 진화 -스웨덴 실업부조기금의 사례

역사상 최초로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한 것은 국가가 아닌 협동조합이었다. 숙련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직과 병가 등에 대비하는 일종의 계(契)조직을 만들고, 그 회원들이 매달 일정한 각출로 기여하다가, 회원들 중 한 명이 실직과 병가를 당했을 때 공동기금으로 실업수당 또는 병가수당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계 조직은 우애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

진 일종의 협동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부조 조직들은 노동조합(trade union)의 모태이기도 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들 역시 19세기 말 처음 생겨날 때, 파업 등 노동쟁의보다는 실직과 병가에 대비하는 상호부조조직 또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오늘날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스웨덴의 (그리고 다른 유럽국들의) 노동조합은 상당 기간 실업수당 및 병가수당을 제공하는 상호부조 조직 역할을 하였다.

그 역할이 소멸하게 된 것은 독일에서 최초로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1930년대 들어 사회민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자만을 상대로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용하던 실업보험제도(이른바 ‘겐트 제도’)가 국가의 실업보험 제도로 확대 재편되면서 종래의 상호부조 방식이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과연 역사의 퇴보이며 스웨덴 노동운동과 같은 개량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의 타락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스웨덴 노동운동의 위대한 승리였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상호부조형 실업보험이 조합원(즉 종업원)의 각출로만 기금이 적립되므로 적립액이 적어 실업자에 대한 혜택이 적었던데 반해, 새로운 국가적 실업보험에는 조합원(종업원)만이 아니라 고용주(기업)도 정기적으로 각출을 해야 했고, 국가 역시 세금을 통해 조달한 국가예산의 일부를 그 실업보험기금에 적립하여야 했기에, 기금이 대폭 증가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조합원들끼리의 폐쇄적인 우애와 상호부조가 기업주까지 포함한 전 국민적인 우애와 상호부조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달성된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공적 직업재훈련 및 교양교육을 통해 달성된 노동자들의 지적 향상은, 스웨덴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기적인 물질적 생계에만 연연하지 않고 생태환경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선진국들 중 스웨덴과 독일 등 보편적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이 동시에 가장 생태환경적 관점도 대중적으로 교양된 나라들이며, 원자력 발전 폐

쇄 등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나라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협동조합과 연대적 복지국가의 협력과 상호보완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례

협동조합 운동과 연대적 복지국가 운동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무상급식, 더구나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협동조합과 무관해 보인다. 그렇지만 모든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생태교육)을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친환경적 식재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추가되자마자 그것은 유기농 생산 및 유통 협동조합과 결합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 친환경 급식 그 자체는 유상급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즉, 일부 부유한 사립학교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식재료 공급을 유기농 협동조합들이 담당하는 것 역시 충분히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더구나 요즘처럼 친환경 유기농 시장 규모가 확장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까지 유기농산물의 유통과 수입, 생산에 참여하는 시기에는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기업들과 시장경쟁 역시 치열해진다. 이 때 대자본으로 무장한 유기농 기업에 맞서 소규모의 유기농 협동조합들이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즉 민주공화국으로서 복지국가)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등에서도 재정보조금 등 특별한 국가적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데, 왜냐하면 협동조합형 유기농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유기농에 비해 종업원 및 고객(조합원)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므로 사회공동체 전체의 복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친환경 유기농 협동조합 그 자체가 저절로 한 사

회의 소득재분배(빈부격차의 완화)를 원리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친환경 급식을 유상배분 원리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한, 한 사회의 가난한 자들은 그 급식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당한다. 오로지 무상 또는 의무 교육 원리에 의해, 더구나 보편주의 원리에 의해 배분할 때만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주의적 무상급식은 재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하며, 그것은 결국 세금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이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무상급식이 세금폭탄이라면 보통의 무상급식보다 좀 더 많은 예산(세금)이 필요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세금 핵폭탄이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느냐 여부는, 과연 세금폭탄론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에 달렸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모든 이는 각자의 능력(납세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친환경 급식의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연대적 공동체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이는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의 싸움이다.

협동조합운동의 사상적 뿌리와 복지국가

서구의 역사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복지국가운동 또는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나란히 성장하였다. 최초의 협동조합들은 그 사상가들마다 강조점이 달랐는데, 미첼(J. T. W. Mitchell)과 포터(Beatrice Potter) 등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강조한데 반해, 루이 블랑크(Louis Blanc) 등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강조하였다. 또한 라이파이젠(Raiffeisen)과 술체-델리취(Schultze-Delitzsh) 같은 이들은 협동조합적 신용(금융)에 더욱 주력했다. 이에 반해 프루동(Proudhon)과 란다우어(Landauer)는 소비와 생산, 신용 등 모든 기능을 내포한 완전한 협동조합 공동체를 꿈꾸었다.

이 중에서 협동조합적 형태의 법인 조직이 소비, 생산 또는 신용, 주택과 같

이 특정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상당 부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과 기업의 ‘모든’기능을 협동조합 조직형태로 대체한다는 꿈은 대체로 실현되지 못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같은 곳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예외의 경우에 속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협동조합 운동에는 여러 가지 갈래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여전히 협동조합 공동체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대체하려는 조류이다. 이것은 19세기의 프루동과 크로포트킨 등의 사상을 이어받는 것으로 ‘자유시장’ 즉, 자본주의 시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를 거부함과 동시에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론을 포함하여) 또는 보수적 개입주의(케인즈주의)도 거부하면서, 아나키즘적 성향을 띠는 입장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상적 조류는 서구의 68혁명으로 탄생한 이른바 ‘신좌파’ 또는 ‘오토노미파’의 입장으로 새롭게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보다는 자본주의 기업, 특히 독점 대기업의 지배의 한계를 보완하는 균형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1960년대의 갈브레이스(J. K. Galbraith)와 파우케(G. Fauquet)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스웨덴의 협동조합 운동은 특히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을 받는다. 물론 위 두 가지 사상적 조류 외에도 협동조합 운동에는 다양한 조류들이 있다. 예컨대 소련의 콜호즈(협동조합) 농장과 같이 현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존재한 협동조합 농장으로 표현된 사회주의적 협동조합 사상도 한 때 있었다.

삼성전자를 협동조합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가?

흔히 자본주의를 대체한 협동조합 공동체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집단은 스페인의 9대 기업일 정도로 규모가 크며,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 걸쳐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하긴 프랑스의 가장 큰 은행은(우리나라의 농협은행과 유사한) 협동조합적 소유지배 구조를 가진 은행이다.

그렇지만 과연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협동조합적 조직형태가 주식회사 법인 형태에 비해 더 우월할 수는 없다. 유한책임만을 가진 소수 주주(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자본(주식자본의 유상증자를 통해)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자본을 밑천으로 대규모 은행차입금도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가 필요한 업종인 반도체와 TV, 자동차와 제약 등의 생산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 기업은 그러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

협동조합은 조직의 주인이자 고객인 회원들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밀접한 상호작용, 상호 신뢰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영업에 중요한 신용(은행)과 유기농사업 등에 유리하다. 주식회사 법인(나아가 대기업집단)과 협동조합 간의 이러한 장단점 차이는 왜 몬드라곤 공동체와 같은 협동조합 기업들이 스페인의 모든 업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유기농 협동조합들이 제조업과 비유기농 유통업 등 여타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분야, 예컨대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조달, 공동 판매 등에 나서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자 협동조합은 대부분 회원사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와해되었다.

물론 친환경 생태주의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필요 없고, 제조업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없고 수출제조업도 없는 한국 경제는 1천만명의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굶주리는 극심한 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과연 이 많은 실업자와 굶주리는 자들에게 생태주의적 협동조합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주거와 식량, 의복을 제공할 생산 능력과 재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동조합을 통해 삼성전자와 수출제조업, 즉, 한국 자본주의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공염과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1998년 외환금융위기 때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굶주리는 수백만 대중에게 생태환경적 관점은 사치에 불과하

며, 그들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자연생태의 모든 소중한 것마저도 아귀다툼을 통해 차지하고 파괴하려 들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파괴보다는 보편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창출을 통해 사회공동체 전체적 차원에서 우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복지혜택과 조세기여의 상부상조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를 즉, 삼성전자와 수출제조업을 보다 휴머니즘 및 생태환경의 원리에 맞게 점진적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길이다.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¹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머리말

복지국가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복지제도의 확충에 인식했던 집단들까지 복지국가가 화두다. 사실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슬로건은 군사정권 때부터 있었던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군사정권들에게 복지국가는 정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수사 정도였다. 반면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실현을 놓고 상당히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위기들이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인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물론 각 집단마다 복지국가 건설(?)의 과정을 사고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사고의 차이는 복지 혜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해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해지는 것 같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복지국가 담론에 걸맞아 보인다. 선별적 복지가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복지라는 것이 늘 사회의 주변적인 계층들을 위한 시혜적인 것으로 제한해버린다는 점이다.

사실 복지의 의미는 선별된 대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 수 있

¹ 본고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성의 재구성을 통한 복지사회 이행전략으로써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수준의 글이다. 그만큼 복지사회로 이행을 위한 풍부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에서 고려되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토대로 좀 더 충실한 고민을 다른 지면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는 물질적·문화적 조건을 충족한”사회적 안녕(well-being)을 위한 그 구성원들의 우애와 연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면 모두가 복지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복지제공의 방식에서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나의 문제 이전에 꼭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현재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의 타당한 대안인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정당한가?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복지사회라는 구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는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먼저 발전하고 또 어떤 사회는 나중에 발전한다. 물론 어떤 사회는 발전하기보다 늘 정체되어 있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하는 사회는 먼저 발전한 사회의 후발효과를 얻게 된다. 이 후발효과는 후발 주자들에게 선발 주자들의 경험을 학습하여 좀 더 빠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한다. 반면 이 같은 후발효과는 이전의 발전 경로에 의존하여 후발주자들의 다양한 발전 경로의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아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개념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사회가 꼭 거쳐야 하는 경로의존적인 과정인가?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타당한 대안인가? 여기서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복지국가 건설의 경로의존성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후발효과를 기획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 사회들은 나름의 보편성을 공유하기도 하고 특수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일방적으

로 수용하여 이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특수성이 이들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을 애초부터 차단하지도 않는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시작은 1880년대 독일에서 사회보험이라는 강제적인 공적 프로그램의 도입에서 비롯된다.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상해 등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산업사회 이전에 이 같은 위협들은 농촌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결속으로 어느 정도 대처되어 왔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원자화되었으며,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산업사회 초기의 노동자들이 겪은 공통의 어려움은 생산, 소비, 신용, 공제,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을 통해 대처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 시기 협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사회이념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태동된 복지국가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주변화 했다.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상해 등의 사회보험을 비롯하여, 공공보건위생, 공교육,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부조로 복지국가들의 영역은 넓어졌다. 이러한 복지국가들의 확대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역시 서구 유럽복지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계는 노동자들의 고용확대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의 여러 위협들을 상쇄시키는 복지국가 확대의 전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시장의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복지국가 확대의 전제가 되었다. 또한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정치의 작동도 언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개입주의적인 국가이론의 핵심적

인 전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1973년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세계 원유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하면서 야기된 ‘오일쇼크’에 의해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못하면서 막을 내린다. 실업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복지국가가 급격하게 증대되는 사회적 위협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긴축재정의 압박이 너무도 컸다.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실제로 이 시기에도 복지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고실업,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 등은 모두 복지수요를 증대시키는 반면 재정에는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복지체계는 그 취약성을 드러낼 뿐이었다.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장 지향적인 탈규제화, 탈중앙화, 그리고 민영화 등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개입주의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를 통해 개입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지탱해온 복지정치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날로 줄어갔으며, 보편적 복지를 떠받치고 있던 중산층의 지지는 보수주의 정당에 의한 복지정치의 토대가 되어 버렸다.

실업은 늘어나고, 사회적 돌봄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들은 앞 다퉈 제조 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사회기반구축 공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전략은 좀처럼 들어맞지 않았다. 기업유치는커녕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다. 개입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시장의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버렸다. 그것의 피해는 온전히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 지역사회의 일자리는 계속 줄었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은 현저히 수요에 못 미쳤다.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의 등장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대응전략이었던 사회적 경제는, 20세기 자본주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지국가의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시민집단들에 의한 다양한 자조운동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71년에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제적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주창한 ‘산업공동소유운동(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이 시작되었다. 지역경제의 쇠락 속에서 지역시민집단들의 자기고용전략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건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CDA)’이 설립되었다. 1978년 전국협동조합개발기관이 설립되면서 전국에 지역협동조합개발기관이 100여개까지 증가한다. 초기에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에 집중되었던 활동은 점차 지역재생사업(Community Business),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부분 공공부문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 전역에 20여개 정도에 머물러 있던 노동자협동조합이 1980년까지 300여개, 1982년까지 500여개, 1984년까지 900여개로 급속하게 늘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1979년도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정책을 펼친 대처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을 받게 된다. 하지만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이들의 활동은 다시 사회적 활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생성되는 토대가 된다. 최근 영국의 사회적 경제는 지역재생,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과 직업능력향상,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 폭넓은 영역에서 시민집단들의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영국과 같은 협동조합개발기관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CDA 탐방보고서를 통해서 협동조합개발기관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1994년에 이들 지역의 협동조합개발기관들

이 그들의 연합회(Förening för Kooperativ Utveckling, FKU)를 구성하였다. 현재 이들 조직은 전국에 걸쳐 25개 지역에서 'Coompanion'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돌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돌봄협동조합들이 건설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사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계기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도된 이탈리아의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복지체계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경기침체에 이은 실업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대는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사회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집단은 지역사회의 자선조직들이었다. 이들 조직들은 노동시장의 취업 애로 계층들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반면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의 자선활동들이 비영리활동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면, 이들 활동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영리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구성원도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법률체계로는 인정되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년 동안의 오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실행되기에 이른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시장의 취업 애로 계층을 위한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A유형 사회적협동조합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B유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유형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별도의 지원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연합회를 통해서 다양한 회원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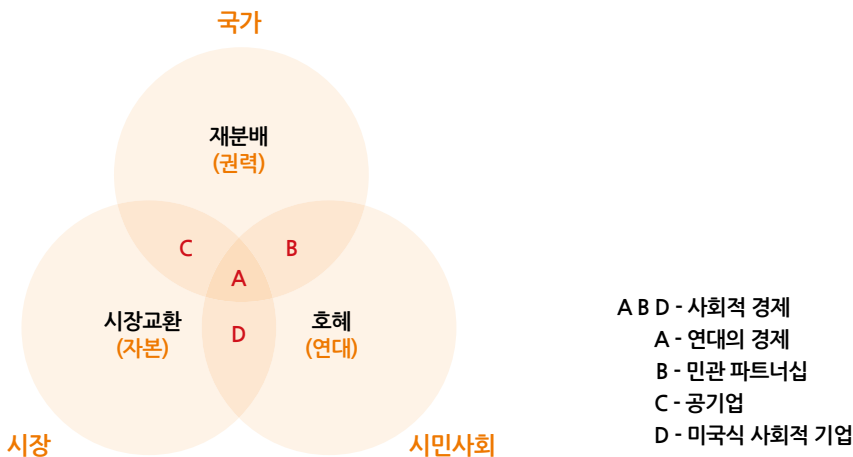
개입과 시장자원의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연대하고 있다.

19세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수행해온 상호공제활동, 공동생산, 공동구매 등의 영역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와 시장경제 안으로 포섭되면서 주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말의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위협 속에서 새롭게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성되는 요인이 되었다. 구성원 중심의 욕구충족을 주요한 조직의 목적으로 하였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초해서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이행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사회가 운영되는 핵심원리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시장에 의한 시장교환, 시민사회에 의한 호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공공재의 운영을 위해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을 펼친다. 시장은 생활세계의 필요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서 시장교환을 촉진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유대를 위한 호혜에 기초한다.

<그림> 사회의 핵심운영원리 및 자원



각각의 운영원리들은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자원을 필요로 한다. 먼저 국가의 재분배는 권력자원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권력은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자원이 된다. 이 같은 권력 메커니즘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 권력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같은 권력자원의 오용은 재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약하게 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시행정이나 비합리적인 정책수행은 이러한 재분배 영역의 권력자원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장교환은 이윤 욕구에 기초한 자본을 핵심자원으로 한다. 시장교환의 과정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그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생산자들의 이기적인 이윤 욕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하지만 자본축적을 위한 이윤메커니즘은 구매자의 욕구충족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이라는 시장교환의 핵심자원은 시장이 생활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매개로 작동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호혜는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다.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와 시장의 부정의에 대항하는 구성원들의 연대자원을 통한 대변 활동이 중심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은 대변 중심에서 서비스제공 중심으로 지향점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운명을 위한 주요한 자원배분은 재분배와 시장교환의 영역에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시민사회의 호혜를 둘러싼 연대자원은 두 영역의 핵심자원인 권력과 자본에 비해서 직접적인 배분이 가능한 자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배분에서 국가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이 자원배분을 위해 국가와 시장에 대해 개입할 때는 유권자와 소비자로서의 지위로 가능하게 된다. 물론 유권자와 소비자일 때 시민의 지위는 국가와 시장의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

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후적인 참여라는 제약이 시민의 지위를 두 영역에서 주변화 시킨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의 구조변화는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예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공적 책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과의 결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중산층의 신뢰에 기반한 복지정치는 해체되어 보수화되어 갔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재분배 되어야 할 복지예산은 긴축재정의 압력을 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개입전략을 통해 복지국가의 재사회화(resocialization)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①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 폭 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③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².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재사회화 방향은 공공성에 기초한 복지사회로 지향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예산 등의 영역에 대한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과 권한 그리고 편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는 공적 책임에서 사적 책임으로의 이전을 토대로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공·사 구분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 두고 있다.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적인 구상과 집행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에서 시민참여의 전제 없이는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생성의 원리를

² 사회적 경제의 개념적 논의는 줄고(장원봉,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NGO』, 제 5권 2호, 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진 사회적 경제는 시민집단들이 공동생산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구상과 실행과정에서 사후적 참여에 제한되었던 시민집단의 유권자 지위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공동생산자(co-producer)의 지위로 바뀌게 된다.

한편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복합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인정하는 사회적 경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지방정부를 공익의 생성을 위한 사업파트너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이들의 소유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업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선에 접근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정치를 재사회화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집단들 간의 권력투쟁의 장이었던 기존 복지정책의 단기적 계산과 시간적 경계의 제약은 이제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복지정치를 재사회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세제혜택, 재화와 용역에 대한 판매수익, 자발적 기금 그리고 자원봉사 노동 등의 복합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지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공동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론장인 복지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장의 무정부적인 투자의 여지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예산을 국가의 재분배 영역에서 시장교환과 사회적 자본까지 확장하도록 한다.

맺음말

지난해 영국출장 길에 어느 영국의 일간지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다. 영국 현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성대하게 개최된 어느 회의장 연설에서 “국민보건서비스(Nation Health Service, NHS)의 간호사들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아주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부터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사행위를 해라 마라 했는지.’

올해 다른 용무로 다시 영국에 와 대형서점에 들렀다 우연히 데이비드 캐머런에 관련된 책을 발견하였다. 그 책의 제목은 ‘큰 사회(Big Society)’였다. 영국 총선에서 그가 내세운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정치 슬로건을 담은 수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책이었다. 저자는 영국 보수당 상원의원으로 그 당의 주요한 정책통이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상당한 것들은 유럽의 사회적 경제 주창자들의 수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요즘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자고 떠들어 대더니,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보수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정당 할 것 없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정책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우선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유럽은 복지국가의 구조변화에 대한 필요가, 한국은 복지확장의 필요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저절로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시민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연대자원은 직접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국가와 시장의 접촉을 통해서 재분배와 시장교환의 영역에서 자원배분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경제는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국가에게 행정 동

원되고 하고, 시장의 이윤 메커니즘에 의해 영리기업화의 퇴행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연대자원을 통한 호혜는 학연이나 지연 등의 특정 집단들의 배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제도화와 시장화 혹은 정실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혁신성을 어떻게 상실해갔는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과의 긴장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양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공공성에 기초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이며, 이를 위한 전략은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에산을 둘러싼 공공성의 재구성에 있다. 역사는 말하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행을 실천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우리사회의 이행을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서 혹은 이윤 욕구에 의한 자본축적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1. 복지와 사회보장은 무엇인가

위키 백과에서는 복지의 개념을 “삶의 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사회보장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¹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학자 시오노야 유리치(塩野谷祐一)²는 사회보장의 역할과 목적을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소극적 역할은 개개인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시민의 삶의 질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적극적 역할이란 도약대가 되는 것이다. 기초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이게 용수철이 되어 개인의 자립과 자율,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연금과 각종 사회기금(장학금 등), 돌봄, 의료, 교육, 고용, 주택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사회에 비해, 이러한 서비스가 그림의 떡과 같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정 사회의 기본이라 할

¹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30일 제정되고 2010년 3월19일부터 개정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² 1932년생, 경제철학과 쉘퍼터 연구자이며 1991년 일본학사원상, 2002년 문화공로자로 선정된 석학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83년), 쉘퍼터의 『경제발전의 이론-기업가이윤-자본-신용-이자 및 경기 회전에 관한 연구 (상, 하)』(1977년) 등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며 저서에는 『가치이념의 구조』(1984년), 『쉘퍼터의 경제관-레토릭의 경제학』(1998년), 『경제와 윤리-복지국가의 철학』(2002년), 『Economy and Morality: the Philosophy of the Welfare State』(2005) 등이 있다.

수 있는 기회의 평등도 지킬 수 없게 된다. 기회의 평등이 무너지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자기실현은 운과 권력에 좌우되며, 이러한 불공정사회는 사회적 연대를 붕괴시켜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와 사회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인정한다. 복지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며 영국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2. 복지는 사회적 연대 - 보편적 사회보장을 추구했던 영국 협동조합운동

한편, 영문 위키 백과에서 복지의 개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복지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자선행위에서 비롯되는 스티그마(낙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최소 수준의 웰빙(생활의 질)과 사회적 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를 '사회적 연대'라고 부른다. (필자 옮김)

이 개념은 보편 복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싸워왔던 역사성과 복지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 같아 흥미롭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의 복지정책(또는 사회보장)의 역사는 스티그마³와의 투쟁이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상류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세금으로 구제받던 빈민층은 늘 사회의 불안요소였으며 골칫거리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계급은 빈민층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834년에 성립한 개정 구빈법은 교회 교구별로 실시했던 원외 구빈을 폐지하고 구빈원(work house)에 입소한 빈곤층⁴만 구빈 대상으로 삼았으며 구제 수준

³ 스티그마(stigma)의 기원은 그리스 시대에 노예의 육체에 찍힌 낙인으로 생긴 상흔을 뜻하는 말이다. 사회 복지분야에서는 선별복지를 통해서 복지 수혜자로 낙인찍힌 당사자들이 이등시민으로 취급받으며 느끼는 사회적 소외와 굴욕감, 좌절감 등을 뜻한다. 스티그마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Spicker, P(1984), Stigma and Social Welfare, Crom Helm Ltd, London(P. Spicker).

⁴ 1820년의 영국 인구는 약 21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1834년 개정구빈법 즈음에 원외 구빈을 받던 인구는 약 35만명, 구빈원 입소 인구는 약 10만명 정도였다.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OECD Development Centre, 2001의 일본어판『경제통계로 보는 세계경제 2000년사』(2004년) 외.

은 ‘최하급 노동자 이하’로 정하는 등 가혹했다. 구빈원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산업자본가의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되어 착취를 당할 뿐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사회보장은 가족, 지역공동체(또는 교회)가 주로 담당했다. 그러나 가족과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어 산업자본주의가 확립이 되던 근대사회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하던 주체는 노동자들이었다.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도 우세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운명과도 같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실업상태에 놓였다. 노동자들은 우애조합, 상호부조협회와 같은 호혜조직을 만들어 질병과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위험에 대처했으며 이들 조직이 이후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노동조합으로 분화했다⁵. 협동조합운동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전수한 로치데일공정 선구자조합은 1844년 창립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주거, 고용, 공제사업을 모두 자력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극적으로 향상시켰다⁶. 이 조합이 농장을 경영했던 우선 목표는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공화국(commonwealth)을 운영한 셈이다. 노동자의 선거권조차⁷ 인정되지 않았던 19세기에 노동자들이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미래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치이념(autonomous idea)’을 현실에 적용하고 퍼뜨린 점이야말로 영국협동조합운동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다. 당대의 협동조합운동의 이론가인 비아트리스 포터 웹⁸은 저서 『영국협동조합운동』의 제2장 단결 정신(spirit of association)에서 영국 협동조합인들의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전한다. 부유층이 굶고 있는 노동자에게 스프를 배급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는데 어

5 쿠리모토 아키라, 2009.

6 김형미, 2010.

7 세계 최초로 성인남성의 보통선거가 실시된 때는 1792년 프랑스 혁명기였으며, 1848년 프랑스 제2공화정 때 남자 보통선거가 다시 도입된 후 독일(1867년), 미국(1890년), 불가리아(1879년)를 거쳐 영국에서는 1918년에야 실시되었다. 1830년대의 차티스트운동에서 무려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이루어진 것은 1928년이니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행사가 실현되기까지는 거의 1세기가 걸렸다.

8 Beatrice Potter Webb(1858-1943)은 영국의 중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가정교사인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에 게서 사회철학과 사회분석방법을 배웠다. 경제학을 독학한 후에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에 깊은 관심을 지녀 『영국협동조합운동』(1891년)을 저술했다. 사회주의운동가 시드니 웹과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런던정경대학(LSE) 창립에 관여했으며 폐비양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부부 공저로는 『노동조합의 역사』(1894년), 『영국 구빈법 정책』(1910년), 『영국소비자협동조합운동』(1921년), 『사회조사 방법론』(1932년) 등이 있다.

떤 면직물 직조공이 끼어들어서 “우리는 스프를 원하지 않소이다.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로스트비프를 먹게 될 것이요”라고, 무례하지만 매우 효과적으로⁹ 자치의 이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조합과 이후 세계로 퍼져나간 협동조합운동이 조합원만을 울타리 안에 모아 자치하며 작은 이상향을 건설하는 활동에만 전념했다면, 협동조합은 19세기 중반에 유럽과 북미대륙에 존재했다는 수백여 군데의 종교적인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협동조합인들은 구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편 복지를 추구하며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러한 운동세력과 연대했다. 국가보건서비스제도(NHS)를 비롯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는 빈곤(destitution)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복지라는 전체의 보편적 문제로 전환시켰으며,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경제자원을 배분하다는 일방적 시선에서, 빈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정의하여 평등한 시민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¹⁰을 제시한 획기적인 보고서이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보고서는 비아트리스 포터 웹의 다음과 같은 복지사상과 정책제안¹¹을 계승했다¹².

지역교육기관은 어린이에게 학교와 선생님뿐만 아니라 책도 제공한다.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굶주리고 있을 때에는 식량을 제공한다. 지역보건기관에서는 병자에게 병원을 제공하고 임산부, 유아에게는 각기 적절한 원조를 행한다. 이런 서비스는 모두 자선이 아니라 공중위생 문제에 속하므로 부자건 가난한 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취급 받는다… 이 모든 것뿐만

⁹ B. Potter, 1891, p.32.

¹⁰ 小峯敦, 2010.

¹¹ 1905년 설치된 왕립 구빈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비아트리스는 1909년 소수위원 보고서를 기초하는데 그 내용은 구빈법의 폐지, 빈곤문제를 예방적 관점에서 다룰 것과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소개소 설치, 마지막에 “빈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베버리지는 이 위원회의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했다. 베버리지를 런던정경대학의 학장으로 추천한 것은 웹부처이기도 했으며 비아트리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金子光一、小峯敦)

¹² 金子光一, 1997.

아니라 그 외의 지자체 서비스는 ‘빈곤¹³의 낙인’이 아니며 불명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지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빈민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취급받는다.¹⁴

이처럼 보편 복지의 청사진을 내걸고 영국의 협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노동당과 협동당¹⁵은 나치독일의 전쟁국가에 대항하여 복지국가¹⁶ 건설을 위해 강력하게 연대했다.

한편, ‘복지는 사회적 연대’라는 이념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통찰한 철학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자기 주변의 인간이 모두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은 자신과는 다른 타자와 공존하며 삶을 누리다가 생을 마감한다. 타자와 공존하는 방식이 ‘협동’이라는 시스템이었다. 협동의 핵심은 호혜와 참가이다. 예수의 가르침인 황금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원리이다. 계, 우애조합, 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직의 시스템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내놓아서 동참한 이웃도 돕고 나도 도움을 받는 것이다.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배우므로 협동조합은 국가가 방기하기 쉬운 민주주의의 교육장이 된다. 협동조합운동의 특징은 이러한 협동시스템을 사회에 개방하고 타자와 끊임없이 연대하는데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공정무역, 사회개발사업이란 형태로 사회적 연대를 실천

13 비아트리스는 빈곤(destitution)을 “빈곤이란 생활필수품이 결여되어 건강, 체력, 활력마저도 잃게 되어 생명 그 자체가 위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단지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저하도 포함한다”고 빈곤이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정의했다. Webb, S & Webb, B., 『빈곤방지책』The Prevention of Destitution, 1911, p.1.金子光一, 1997, p.234에서 재인용.

14 비아트리스 포터 웹의 『구빈법의 철폐』‘The Abolition of the Poor Law’, in Fabian Tract, 1918, No.185, p.4.金子光一 (1997), p.3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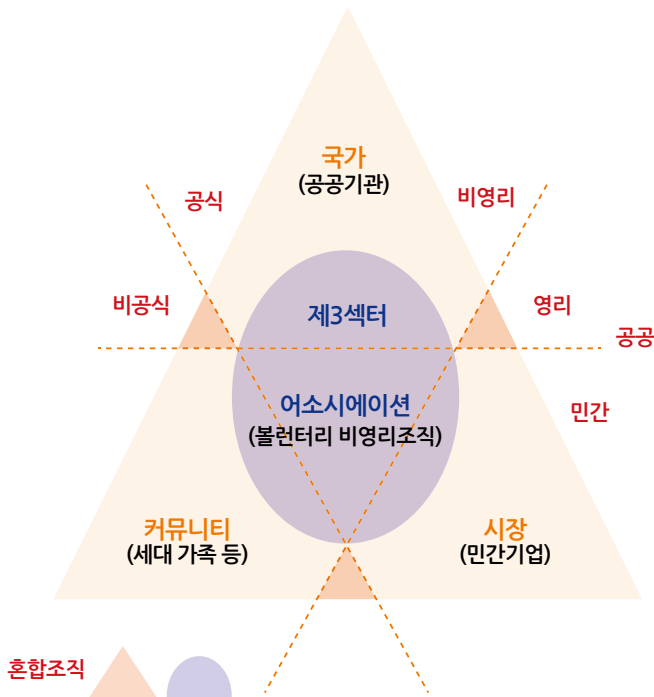
15 협동당(The Co-operative Party)은 1917년 탄생하여 현재 영국의회에서 4번째의 세력을 지닌 정당이며 협동조합운동의 정치부문을 대표한다. 정립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협동조합운동과 호혜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을 위한 정치(politics for peopl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정치활동 면에서는 보수당에 대항하여 자매정당인 노동당과 협정을 맺어 공동전선을 펼친다. 후보는 노동당-협동당 연합후보로 추천되고 현재 29명의 하원의원, 11명의 상원의원과 70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정치성향은 중도좌파. 공식 사이트는 www.party.coop

16 시오노야 유리치(塩野谷祐一)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사회보장’의 3층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한다. 복지가 사회적 연대라는 인식은 복지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협동조합의 당사자형 복지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으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비롯된 저성장과 재정위기 등으로 시장이 국가 대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주체로 강력히 떠올랐다. 국가나 시장이나 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누가 담당하는지 들여다보면 양자와 함께 사회적 경제¹⁷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그 관계를 스웨덴의 사회학자 빅터 페스토프는 복지삼각형모델(The



¹⁷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협동경제, 사회연대경제, 제3섹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의 발상지인 유럽의 기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경제활동단체는 협동조합, 공제단체, 어소시에이션(임의의 시민경제조직)과 재단이다.

¹⁸ 쿠리모토 아키라, 2009, p.63.

third sector in the welfare triangle)이라는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민의 삶의 질(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의 3영역과 가장 많이 겹치는 부문이 바로 시민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공동육아는 일본 생협의 생활지원모임¹⁹ 커뮤니티와 겹치고, 스웨덴처럼 바우처를 지급받아서 공립유치원대신 학부모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의 공공보육 서비스와 겹친다. 일본의 생협들은 개호보험이라는 공적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시장 속에서 영리기업과 나란히 고령자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장 속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를 전개한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펼쳐는 복지서비스는 가족의 한계, 시장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질과 차원으로 전환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스웨덴에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공공보육서비스가 축소되던 1990년대 전반에 무려 3,500개나 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여 육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한²⁰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고령자복지사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가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사업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조사, 검증했다. 비교우위의 요인으로 ①(이익보다)이념이 우월, ② 이용자의 바람과 필요 중시, ③ 주민참가, ④ 효율적인 경영, ⑤(상대적으로 높은)노동분배율, ⑥ 노동자의 자기결정을 꼽았다²¹.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전개하는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시장이 펼치는 그것과는 다른 특징, 양 쪽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혼합형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¹⁹ 생활지원모임(助け合いの会)은 보육, 가사지원, 이동서비스 등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타 조합원이 유료 자원활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간당 이용요금, 이용규칙 등은 모두 모임에서 결정한다. 여러 생협마다 수십~수백여명의 자원활동자와 수백~수천여명의 이용 회원이 있다.

²⁰ Pedwell, 2003.

²¹ 上野千鶴子, 2007.

국가, 시장, 제3섹터의 복지서비스의 특징

	장점	단점
국가 (제1섹터)	-운영 책임은 행정기관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되므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쉽다.	-질적 수준은 보통 최저 수준이다. -이용에는 소득 제한이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지는 제한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필요보다는 표준화가 우선되기 쉽다
시장 (제2섹터)	-이용자의 선택지가 넓다. -시장경쟁 하에서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기 쉽다. -서비스를 구입하는 쪽의 주권을 계약에 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달리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용료가 너무 높아 절반 정도의 시민에게만 그림의 떡이다.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사회적 경제 (제3섹터)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서비스이므로 선구적인 사례가 많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일치하거나 교차하므로 상호이해가 촉진된다. -표준적 서비스 이외에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거버넌스에 참가하기 쉽다.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기 쉽다. (자원활동가와 연구자 등)	-초기자본 투여가 소규모여서 재정 안정성이 미지수인 경우가 있다. -품질에 대해서는 독자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최고수준에서 최저수준까지 다양하다. -국가, 시장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다.

(자료: 京極高宣(2006)에서 필자가 가필, 작성)

한편 사회적 경제 속에서도 협동조합이 전개하는 복지서비스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필자는 '당사자형 복지'이면서 위 표에서 지적한 단점을 극복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형태라는 점을 들겠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가로 자본을 형성하고 이용자의 필요(needs)를 충족하는 사업을 펼치는데 복지사업인 경우 이용자가 곧 조합원인 경우가 많다. 이용자와 사업 주체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 곤란할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므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상의 소통, 정서적 교감, 배려와 신뢰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준다.

또한 같은 조합원이라는 당사자성은 복지서비스의 공정한 지불과 대가에 대한 합의형성을 촉진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가능한 한 저렴한 이용료를 원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충분한 대가를 바란다. 이러한 모순을 영리기업의 복지서비스는 시장가격으로 해결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기 쉬운 가격으로(예를 들어 조합원가격)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국가가 설정하기도 어려운 가격에도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협동조합은 많이 만들어왔다. 생협의 공동육아 및 어린이학교, 방과 후 교실, 의료생협(한국),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영국), 복지클럽생협(일본), 의료협동조합(미국) 등²²이 있다. 당사자형 복지는 곧 참가형 복지이기도 하다. 복지서비스의 일방적인 수혜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개선의 제안자가 되고 경영에도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작은 비영리조직의 복지서비스가 중심인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영으로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사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새로운 이사를 발굴하면서 복지사업을 펼친다. 거버넌스 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 중에서도 우수한, 계속성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당사자형 복지는 맞춤형 복지²³이다. 조합원의 필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여 협동조합의 재원을 투자, 분배하되 조합원의 변화와 다양성에 맞추어 낡은 서비스는 종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등 환경적응성이 높다. 협동조합의 당사자성 복지는 재원의 낭비와 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2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오사와 마리 편저, 『생활 속의 협동』(2009년, 푸른나무)의 제2장, 6장, 7장, 10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23 이 용어는 안승훈(2011)에서 따왔다. 안승훈은 보편 복지, 선별 복지라는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를 제안하고 있다.

4. 맺으면서

필자는 이 글에서 복지의 이념과 사회보장의 두 가지 역할에 비추어 협동조합운동이 보편 복지를 추구해 온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협동조합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당사자형 복지의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보다 장점이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페스토프가 제시한 복지삼각형모델에 속한 섹터의 역할과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시장, 국가, 제3섹터(비영리.협동)는 시민의 삶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며, 시민은 적절하게 이를 분별해서 이용하거나 조합하면서 자신에게 최적의 복지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속에서,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당사자형 복지의 담당자이면서 국가가 공정하고 보편적인 복지사회의 시스템을 짜고 운영하도록 적극 추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한 필자의 소감을 밝히며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2011년 8월6일 런던에서 시작된 폭동이 주요 도시로 번지면서 영국 생협의 매장도 방화와 약탈로 인한 피해를 입고 10일에는 영업을 중지했다. 이번 폭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와 시민들도 아직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자가 1,600명(8월13일 현재)인 이번 폭동은 캐머론 수상이 “배경이 다른 청년들이 같은 행동을 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동”으로 정의했을 정도로 경험한 적이 없는 형태이며 동기와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부유한 여대생, 그래픽디자이너, 초등학교 보조교사, 11세 소년 등 다양해서 불만세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영국은 협동조합운동의 발상지로 현재도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이 대단히 많은 나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 복지서비스 축소, 빈곤에 대한 심각한 박탈감, 불공정함이 축적된 데다 빈곤한 시민에 대한 차별과 감시, 과잉, 단속이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번 사태는 실업 상태에 있

는데 급격한 재정긴축으로 인해 사회보장을 축소할 때 사회불안이 얼마나 증폭되는지 보여준다.

이런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보장은 공정한 협동 시스템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장경제제도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보정, 또는 보완하는 제도이다²⁴”는 통찰력 넘치는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비아트리스 포터 웹을 비롯하여 영국의 협동조합인들이 꿈꾸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였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폭동이 대처 수상의 자유당 정권 이후에 보편 복지의 시스템을 재구축하지 못한 채 시민의 당사자성 복지에만 의존해 온 영국 정치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의 복지사업, 운동은 보편 복지를 구축하는 운동 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안승훈(2011), “차별없는 맞춤형 복지”, 『페어 소사이어티』, 한국경제신문.
- 쿠리모토 아키라(2009), “협동조합은 ‘생활 속의 협동’을 담당할 수 있을까?”, 『생활 속의 협동』, 푸른나무.
- 김형미(2010), 『협동조합의 발자취와 숨결-또 하나의 대안』, 아이쿱생협연합회 경영코스 자료집(비매품).
- Potter, B.(1981), The Co-oprative Movement in Great Britain, London.
- Stryjan, Y.(1996), Cooperativ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Swedesh social welfar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No67, pp5-27, CIEREIC.
- Pedwell, C.(2003), Developing Diverse, Sustainable Approaches to Childcare: Multi-ethnic pre-school lessons from Sweden, Social Enterprise, London.
- DEFOURNY, J. and PESTOFF, V(2008), Images and Concepts of the Third Sector in Europe, EMES.
- 金子光一(1997), 『ピアトリス・ウェブの福祉思想』, ドメス出版.
- G. 에스핀-앤델센(2008), 『앤델센, 福祉を語る』, NTT出版.
- 塩野谷祐一(2002), 『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 東京大学出版会.
- 上野千鶴子(2007), 『ケアの社会学 第二部 七一生協福祉の展開(1)』, 『at8号』, 太田出版.
- 京極高宣(2007), 「福祉社会論からみた生協-福祉社会における生協の役割」, 『現代生協論の探求-理論編』, ユーブ出版.

²⁴ 시오노야 유이치, 2002, p.248.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향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세계에서 시민의 생활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다¹. 한국은 62위, 일본은 43위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공부를 시키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많은 시간 노동과 학습을 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는 조금 늘었지만 행복은 늘어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건강, 노후, 자녀교육, 실업불안 등 미래에 대한 삶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노력이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란 믿음을 우리사회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경쟁을 통해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가면서 만족도를 높여갈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2. 복지국가 덴마크의 협동조합

덴마크는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열심히 일하면 노후, 건강, 의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학비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복지국가이다. ‘생활만족도와 행복도’ 조사의 1~10위를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온 결과 ‘생활만족과 행복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¹ 미국과학재단, 영국레스터대학 조사.

북유럽의 이런 높은 복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덴마크는 1860년대 전쟁에서 진 후 현재의 조그만 땅덩어리만² 남은 유럽의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이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고등학교운동³과 협동조합운동이었다고 한다. 면적이 작은 나라가 농업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 때문에 한국은 이미 농업을 포기했고, 농민이 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작은 땅인데도 농업으로 부를 일군 나라, 복지를 만든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를 이렇게 만든 저변에는 협동조합운동이 있다. 덴마크는 18세기 농노해방을 통해 자영농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나, 땅을 소유한 농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1860년대 독일과 전쟁에서 패한 어려운 현실에서 자영농민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협동을 통해 농업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동업조합이다.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여러 사람이 동업을 하는 것과 같아 그만큼 제대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동업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것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건 경제적 협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 사업을 하는 협동(동업)은 사업자금 마련, 능력에 따른 인력배치, 영업, 생산 등 동업자 간에 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고, 동업자가 모두 자기 개인사업처럼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업이 잘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과, 정직한 비용의 발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이를 조정하고 협의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런 협동의 어려움을 국민고등학교운동이라는 교육운동을 통해 학생, 청년, 노인 등 모두에게 협동의 가치와 방법을 가르쳤다. 결국 덴마크는 농업협동조합으로 부를 일군 드문 나라가 되었다.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체이다.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사업

² 덴마크는 면적 43,000km로 남한의 1/2도 되지 않음. 인구는 1/10에 불과한 약 550만명.

³ 또는 고등국민학교운동이라고도 한다.

체를 만들어 협동을 하는 것이다. 경제사업체를 구성하려면 사람과 자본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사업체가 성립된다.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인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경제사업체의 자본을 조합원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외부에서 빌려와야 한다.

덴마크의 소비자협동조합은 186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농업협동조합은 1880년대에 조직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 뿐 아니라 신협이나 농촌 저축조합, 보험조합 등 금융협동조합도 함께 만들었다. 협동조합을 하는데 어려운 조건 중의 하나는 경제사업체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초기 덴마크의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민 개인들이 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금융조합을 만들어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1929년 덴마크협동조합의 현황⁴을 보면 생협 1,852개, 낙농, 축산 등 농업협동조합 9,197개, 신용, 보험, 농촌저축조합 등 금융 1,890개로 협동조합의 나라였다.

덴마크의 농민들은 소비조합, 생산조합, 금융조합 등 영역이 다른 3개 분야 협동조합의 유기적 결합과 관계성 그리고 국민고등학교운동이란 교육운동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성공시키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3. 아이쿱생협의 성장 동력은 조합원의 참여

한국사회는 개인과 사기업이 중심인 경제체제로 협동경제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협동과 연대로 발전한 10여년 간의 아이쿱협동조합 운동의 노력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29일 기획재정부 관료가 자연드림 분당 이매점을 방문했다.

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심포지움/한국 생협운동의 기원-식민지시대의 소비조합운동을 찾아서 김형미 발제문.

물가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쿱생협의 사업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매장을 둘러보고 생협 관계자들과 유통구조에 대해 토론했다. “생협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인데다, 가격안정기금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도 완충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생협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⁵고 했다. 가격안정기금 조성 방법, 직거래-계약 생산-소비시스템 등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아이쿱생협의 정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관계자가 관심을 가진 생산안정기금이나 생산-소비 직거래 계약시스템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본이 조달될 수 있어야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미약하나마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소비자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덴마크처럼 금융협동조합이 있어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은행 등 외부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한국사회 현실에서, 생협이란 경제사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참여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비영리단체에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에 오너가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을 우대하는 금융 풍토에서 많은 조합원이 주인인 비영리 협동조합기업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쿱생협은 2000년 물류센터가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복구자금을 조합원들이 모아주었다. 2002년 우리밀 파동 때도 농민들과 계약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밀 수매자금을 조합원이 직접 모아주었다. 이 사업은 현재 자연드림 베이커리사업으로 발전하여 당시 국내 우리밀 연간 총 생산량 6천톤과 비슷한 규모인 약 6~7천톤의 우리밀을 아이쿱생협에서 직접 파종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류센터 건립비용과 유기농식품생산단지인 괴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자금도 대부분 조합원에게 요청하여 조달하고 있다.

⁵ 2011년 8월2일 연합뉴스.

아이쿱생협은 2007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자연드림 매장을 100개 가까이 개설했다.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0개 가까운 매장을 개설하는데 들어간 자금 약 300억원도 조합원의 차입과 출자로 만들어졌다. 이런 조합원의 출자와 차입은 외부 자본이나 정부에 의한 불필요한 간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생협이 자립-자조-자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소비자 조합원이 해주었기 때문이다.

4. 생산수단을 조합원이 소유하여 부(富)가 지역에 축적되는 협동조합

ICA(국제협동조합연맹)가 정한 협동조합의 원칙 가운데 ‘제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로,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고 되어있다. 조합원이 자본조달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생협들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이 발전하면 조합원을 통한 자체 조달에 한계가 있어 협동조합은행에서 조달한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초국적 유통자본인 까르푸의 매장 12개를 인수하면서 고용을 승계하고 물가를 안정시킨 스위스생협(코업스위스), 그리고 스위스의 소매유통에서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미그로생협은 직접 금융업을 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등 협동조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할 것이 금융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한국은 소비자생협이 금융사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협 등 금융관련 협동조합도 부실 운영을 이유로 더 이상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당분간 생협에서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만들 수 없고, 법제도의 큰 변화가 없이는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협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 조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지역이나 동일 영역에서 그 사회적 재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내부에서 생산된 재화가 순환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내부에 축적하는 것이다. 2008년 8월31일 방영된 KBS스페셜 ‘오래된 미래 CO-OP, 부산, 볼로냐 두 도시이야기’는, 1970년대 한국경제의 견인차였지만 위기의 도시가 되어버린 부산과, 1950~60년대 가난한 도시였지만 부유한 도시가 된 이탈리아 볼로냐의 비밀을 다뤘다. 놀라운 경제력으로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수도 볼로냐를 탐방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재화가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점차 쇠퇴하는 부산시와, 재화를 내부에서 순환시키면서 점차 발전해 온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비교한 대목이 있다. 볼로냐는 1960년대까지 그저 오래된 중세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불과 20여년 만에 많은 유럽도시 중 10번째 안에 드는 잘사는 도시가 되었다. 신문, 잡지 등에 활발하게 보도되면서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400개가까운 협동조합이 있는 볼로냐시는 도시 내에서 생산하는 재화가 외부 자본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간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꾸준히 쌓여왔다. 볼로냐에는 경비, 관광, 미디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부터 낙농 등 농업협동조합, 명품 가죽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노동자협동조합까지 도시 경제의 50%를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체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⁶. 인구 37만명의 볼로냐시는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 명품을 파는 가게가 서울의 명동만큼이나 많다. 볼로냐 시민들이 이를 소비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보다 내국인 관광객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점포들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많은 품목을 볼로냐에 있는 생산자협동조합에서 만들고, 소비되는 순환 속에서 ‘도시의 재화’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축적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된 것이다. 협동조합이 많은 볼로냐 경제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 중심인 부산의 비교는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은 협동조합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⁷. 한국처럼, 재화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

⁶ 볼로냐가 속한 로마냐에밀리아주는 재화의 32%를 협동조합 경제가 담당하고 있음.

⁷ 2008년 8월31일 KBS 일요스페셜에서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교수 인터뷰.

도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 중소 도시는 인구 감소, 재래시장 폐쇄,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되므로 볼로냐와 같은 현실을 상상하기 힘들다.

5.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 한국

다시금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2011년 8월, 한국은 가장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 7위 교역규모, 13위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한국경제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위험국가로 취급받는 것은 내부에 쌓인 재화보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외부자본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화는 어디에 있는가? 산업과 금융을 글로벌화 하여 세계경제구조에 단단하게 편입된 결과 내부의 재화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문제인 것은 제조나 서비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기 거래를 통해 차액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금융감독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중간 배당으로 챙겼다. 외환은행은 8월1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주당 1,510원, 배당총액 9,738억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지분 51.02%를 가진 론스타는 4,968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지금까지 챙긴 배당액이 모두 1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이미 시장에 판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하면 2조9천억원대를 회수하게 된다.(중략)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매매계약 연장 재협상을 하면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4조6,888억원으로 유지하고 지연보상금을 주지 않는 대신 고액 배당을 용인...⁸”

1998년 IMF사태 때 외환은행은 1조원 정도의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론스타는 벌써 3조원 가까운 자금을 본사로 송금했고, 외환은행을

⁸ 한겨레신문 7월1일.

5조원에 팔려고 한다. 총 8조원을 벌었고, 원가 1조원을 빼면 약 7조원을 론스타가 가져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론스타가 국외로 이전하는 7조원은 누가 만들어준 것인가. 한국의 국민들이 은행금리, 각종 이체 수수료로 낸 것이고 수많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은행 창구에 앉혀 인건비를 아낀 경영으로 번 돈이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내부의 재화를 국외로 이전하므로 국내에 자본이 축적될 가능성은 없다. 글로벌 금융체계에 편입된 결과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외국자본이 이미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여전히 자본 조달을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나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6. 생협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협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가을철에는 농산물을 수매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 생협에서 필요한 자본을 모두 외부에서 차입한다고 가정하면, 물류센터 건립, 수매자금 등 필요한 자본이 1천 억원일 때, 은행에 지불할 이자만 연 6~7%로 계산했을 때, 6~70억원이 해마다 은행으로 나가야 한다. 10배로 성장하면 연 6백억원이 이자로만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다. 만약 이 자금을 조합원의 출자와 차입으로 조달한다면 막대한 이자가 내부에 남게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매장의 구매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이용 수수료도 평균 2.3%로 이 또한 카드 회사로 나가게 된다.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자본이 이자, 카드 수수료만으로 외국자본이 주주로 있는 은행이나 카드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만약 이 재화가 내부에서 순환되고 축적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제규모가 이후 1조원, 2조원으로 확대된다면 해마다 수수료로 내부에 축적될 자본의 규모는 수백억원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 경제는 생협경제 안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조달방식에 따라 조합원과 생산자, 생협의 '부'는 축적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7. 선수금의 의미와 역할

아이쿱생협이 2011년 5월부터 시작한 수매선수금 운동은 기존의 소비관행을 깨고 낯선 소비 방식에 적응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한국의 다른 소비자들처럼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열심히 카드 사용을 독려한 노력의 결과이다. 가정에서 공급 받는 조합원은 CMS 자동이체방식으로 결제를 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후불 결제방식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비용 지불을 나중에 하는 것은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나 CMS 납부 방식의 결제시스템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10만명이 매장과 가정에서 매월 평균 205,000원 정도의 생협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⁹. 월 이용금액은 2백억원이 넘고, 올해 조합원이 구매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은 일반 소비자와 달리 생협에 대한 높은 이용 집중도로 안정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 만약 2011년을 기준으로 올해 모든 조합원이 결제방식을 매월 이용하는 만큼 미리 선수금으로 낸다면 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현재 약 7%의 조합원이 선수금을 내는 것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모든 조합원이 함께 한다면 이 자본의 위력은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소비자 조합원이 결제방식만 바꾸어도 내부 구성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봄 영농을 시작하기 전 농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은 분주하게 농협이나 은행을 넘나든다. 이렇게 은행 등 외부에서 차입한 농사자금의 조달 비용(이자를 포함하여)은 생산비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물품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연대보증 등을 통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영농 자금을 차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금리 등 높은 조달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생산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2011년 상황에서 소비자 조합원

⁹ 2011년 6월 조합사업현황.

과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수매선수금 운동은 올해부터 생협이 생산자에게 은행의 역할, 농협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농민에게 선수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은 영농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조달비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의 영농을 안정시켜 소비자 조합원에게 약속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생, 동반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다. 소비자가 비싸게 사면 생산자는 이익을 보고, 반대로 소비자가 싼 가격에 구매를 하면 생산자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 세일기간인 할인마트에서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하여 좋아하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영업사원 인건비까지 지불하면서 올상인 중소기업이 있다.

생협은 이미 오랜 동안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상에서, 조합원이 참가하는 수매선수금 운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생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선금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런 신뢰의 관계를 오히려 낮설어 한다. 중간 도매상에게 출하한 농산물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농촌에서, 출하하지도 않은 농산물 가격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생각하기 힘든 믿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이후, 생협은 1차 생산과정부터 가공까지, 생산영역과 농장에서 조합원 식탁까지 유통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변했다. 특히 ‘생산-수매-출하’의 생산영역은 다른 나라의 경우 농협이나 수협 등 생산자협동조합이 해야 할 분야를 우리나라는 생협이 직접 ‘생산관리-수매-소비자공급’까지 하고 있다. 소비자 유통은 일반적으로 출하를 받는 단계에서 시작되는데 반해, 생협은 생산계획과 생산관리부터 농산물수매, 소비자인 조합원에 대한 적기 공급까지 생산자협동조합의 역할과 소비자협동조합 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조합원의 신뢰는 높은 반면 생협이 해야 할 역할은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비용과 자본을 선수금으로 지원하려

는 것이다.

이전에도 생협은 쌀, 우리밀, 깨 등 곡물류를 직접 구매하였고 일부는 지역의 농협과 협력하여 구매를 위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폭염, 2011년 초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조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 여름 조합원이 경험한 과일,채소류 부족사태가 일회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할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연의 변화에 대해 아이쿱생협은 곡물류를 비롯 채소, 과일, 축산 등 모든 품목과 작목으로 구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 수확기 구매자금 뿐 아니라 농사 준비철 영농자금을 미리 주는 방식으로 범위와 개념이 넓어진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 부진은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가격 폭등으로 연결된다. 점점 잦아져 구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2010년 여름 혹서로 인한 배추 가격의 등락을 보면 한 포기에 15,000원이나 하는 초유의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늦가을 김장 시기에도 5천원을 웃돌아 많은 소비자들이 김장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때 아이쿱생협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생협처럼 하지 못한다고 농협을 질타했다. 유기농배추 한 포기를 1,600원대에 공급한 생협의 사업시스템과 직거래 관계에 대해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가격안정기금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협과 계약을 지킨 생산자들과 평소 맺어온 신뢰가 산지 가격이 폭등해도 어려운 시기 빛을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전 품목에 대해 계약 생산지에 선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필요로 하는 구매자금은 대략 주.잡곡에 약 200억원, 우리밀 50억원, 과일과 채소류 약 100억원, 축산 등 기타 총 약 400억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의 선수금으로 100억원을 모으려고 한다.

8. 수매 선수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

생산자에 대한 선수금 지급으로 생산자도 소비자도 변화하고 있다. 선수금 운동은 조합원의 변화가 생산자의 감동을 추동하는 운동이고 사업이다. 선수금을 받는 생산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계약한 만큼 생협에 공급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영농자금 조달에 걱정이 없어진 농민들은 근심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좋은 결실을 맺는데 열중하면 된다. 농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생산은 안정될 것이다. 수매자금은 1차 농산물만이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지급이 되고 있다. 흥성과 완주, 고산의 한우 생산자에게 송아지 입식자금이 지원되었다. 특히 구제역으로 축산의 기반이 흔들리고, 송아지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에 입식자금이 선수금으로 지원되어 큰 힘이 되었다. 농축산물 가격의 폭등은 생산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상생의 관계를 후퇴시킨다. 이런 상황이 2~3년 주기로 반복되면 안정된 가격의 공급이 어려워 생협의 사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농민들과 일정 규모의 양돈농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생협의 역할이다. 이처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조합원이 이용할 물품가격을 미리 내는 운동을 통해 조성하려는 것이 바로 선수금 운동이다.

조합원이 참여한 선수금 운동은 협동조합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협동조합이 경제의 주체로 우리사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선수금 운동은 올해 10%, 내년에는 20~30%를 목표로 조합원 참여를 호소할 것이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경쟁과 외국자본에 의해 출렁이는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협동조합 경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회이다. 우리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사회적 재화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 순환과 축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윤리적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협에서 보여주자.

선수금 운동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로 내부에 필요한 자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은 금융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선수금, 차입, 출자금이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험난한 시장 경제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중의 힘으로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때/곳: 2011년 8월11일(목)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석: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김민경(한살림), 이미연 (아이쿱구로생협), 장남희(서울의료생협),

사회/정리: 김아영(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입니다. 주제가 광범위해 보이는데요, 먼저 현재 각 조직별로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참여와 협동이 조합원만의 이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해보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는 전국 조직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원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말씀하실 때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김민경(한살림/이하 김민경): 저는 서울 한살림 대표로 활동했고, 지금은 한살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개인적으로 1989년에 한살림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한살림은 처음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사단법인이었던 기간이 있었고, 2003년부터 다시 협동조합으로 조직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 가입이 해체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공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희미해진 부분이 있었지만, 출자금과 쌀수매 선수자금 모금, 매장 사업 자금 마련 등 조합원들의 경제적 참여가 다양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요즘 가입 출자금 외에 매장이나 공급이용 출자금 참여 정도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다른 생협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살림 조합원들은 마을모임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직적으로는 지부운영 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사회 참여 활동은 주로 먹을거리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에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고, 수돗물 불소화 반대 운동 등 우리 생활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될 때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 의정 활동에 대한 참여 등을 조합원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생협 조직이 커지면서 의사결정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다른 생협들에 비해 큰 조합원의 규모를 먼저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아직은 불완전

김민경: 그 부분은 한 살림 전체에게도 과제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경우 마을모임의 햇살지기를 통해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대의원이 되기도 하고, 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된 활동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총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2년도 총회를 위한 대의원 구성이 각 회원 생협의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보다 발전한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 총회에만 참석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의원 모임 등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을 선정했는



김민경(한살림)

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왜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으로 선정이 되면, 총회에 참석하여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이후 중간 사업보고 모임에도 참여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대의원 의견 개진이 차기 총회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회원 생협의 상황에 따라서 선출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이하 권순실): 저는 현재 인천푸른생협 조합원이면서 생협전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생협의 마을모임은 공식화된 기관 조직이라기 보다는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생협과 조합원들이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은 이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대의원들은 적어도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협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떻게 조합원들과 소통할 것인가와 조합원들을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생협의 고민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총회만 참석해서는 제대로 된 대의원의 역할 어려워

장남희(서울의료생협/ 이하 장남희): 저는 서울 의료생협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장남희입니다. 서울 의료생협은 2002년에 만들어졌고 조합원은 약 2,000세대 정도입니다. 조합원의 확대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작년 생협법이 바뀌면서 두 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저희도 다른



생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의료생협은 참여 조합원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퍼져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지역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일 년에 한번 총회 전에 대의원들과 함께하는 지역모임을 통해 대의원 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만 참석해서는 대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의료생협은 대의원이 108명인데 약 50%이상이 지역모임이나 소모임, 위원회 등 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드민턴, 등산 등 소모임이 활발 하게 진행되면서 소모임을 통해 활동하는 대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 의료생협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어떤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조합원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남희: 서울의료생협은 2006년도에 출자금을 10만원에서 2만원 대로 낮췄 습니다. 현재 중장기 발전과제로 건강검진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2,000세대의 조합원이 10만원씩 증좌 출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7년에 치과를 개원했을 때도 조합원의 증좌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생협은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생협의 의료기관은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약 통해 먹을거리 생협 조합원이 의료생협 이용도 가능하게

권순실: 의료생협처럼 기본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생협의 사업에 그 지역의 다양한 생협들이 협동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평화의료생협이 치과병원을 개원할 때 지역의 다른 생협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물론 협약을 통해서 먹을거리생협 조합원이 평화 의료생협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선

례는 지역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협력을 통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든 자신이 속한 생협 외에 다양한 생협의 역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협동조합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이하 이미연): 저는 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구로생협은 구로구 주민 43만명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지역생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조합원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참여가 좀 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생협은 2001년도에 설립되었고 2009년에 매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설립 이후 가입한 조합원 수와 매장 사업 후 2년 동안 증가한 조합원 수가 같은 정도로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다양한 사안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무실 마련을 위한 증자출자 운동과 우리밀 구매 자금을 위한 출자, 매장 사업을 위한 차입과 출자 운동 등 다시 생각해보니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당면과제는 조합원의 참여를 위한 조직화입니다. 현재 매장이 있는 지역에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조합원 활동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통신을 통해 조합원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점차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통신은 문서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통신 자료를 보고, 제시된 문항에 답을 적어서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매장 주변에 거주하는 조합원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과 교육을 진행 등 조합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의사결정의 참여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부분은 구로구 지역의 특성이 많이 반영

되는 편입니다. 구로구는 진보적인 사회 운동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구로생협도 지역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2003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급식 지원을 받았는데, 이 때 200명 정도였던 구로생협 조합원이 1,400명의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특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실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로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참여예산제에 우리 생협 이사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규모 커질 때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참여 문제의 해답

사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합원의 경제적, 민주적,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조합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정도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조합들은 어떻게 조합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과 활동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개인적으로 우리 구로생협의 장점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조합원을 믿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과제를 향해 전진해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로생협이 2009년에 매장 사업을 시작할 때 약 300여명의 조합원이 차입과 출자를 통해 4억5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매장 사업을 시작한 후에 300명이던 조합원이 약 1,300여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올 해 또 다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조합원 선수금 운동입니다. 조합원 선수금운동은 조합원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쿱연합회 소속 지역 생협 전체가 같이 시도하는 새로운 자금 확보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매달 혹은 반년에 한 번씩 조합원이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5월 초부터 조합원 선수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참여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이 어떻게 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성공은 조합원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가 관건

사회: 의료생협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협들의 연대라는 새로운 참여와 협동을 시도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남희: 서울 의료생협의 경우 치과를 개원할 때 송실대 대학생협이 함께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실대 대학생협 조합원도 서울 의료생협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축제 때 서울 의료생협이 건강 체크를 해주는 등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송실대 대학생협 조합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저희도 대학생협과 공동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현재의 단계는 조합 간 협력 관계는 체결했지만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순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해서는 조직 임원진들의 연대와 협동이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푸른생협의 경우 인천 평화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원장님이 푸른생협의 소식지에 기고를 통해 건강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올 해 하반기에는 아토피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함께 행사를 주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교류와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다음 사업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생

각합니다.

장남희: 현재 서울 의료생협이 준비하고 있는 건강검진 센터 사업의 경우는 대학생협, 마포·은평과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먹을거리 생협과 다른 시민단체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합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중하다 보면 자칫 조합원을 단순히 조직화의 대상으로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협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이미연: 저는 규모화된 조합에 맞는 새로운 소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조직 형태가 마을모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4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조합에서 지원을 하고, 마을모임 지기는 매달 열리는 마을지기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을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의 마을모임은 규모화된 조직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일본의 생협 중 하나인 팔시스템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팔시스템은 조합원이 창업 계획을 내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개인 삶의 비전까지도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조합원은 생협의 울타리 속에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언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조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라인이나 단지별로 모임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엄마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생협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나 책자만 읽어도 모임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등 조합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야하지 않을까요?

권순실: 또 다른 예로 의료생협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이나 안산 지역의 역사가 있는 의료생협은 이미 이전부터 조합원을 능동적인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의원 총회를 예로 들어보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각 마을 별로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생협 사무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선출된 대의원들이 조합원들과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의사를 집결하고 책임성 있게 조합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은 대의원을 통해 수시로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저는 이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조합원들과 만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협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운동성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정치적이라면, 생



협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모두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협의 다양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어떻게 모아내고, 합의 하에 생협의 일반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지역생협 이사장님들과 워크숍을 해보니 대부분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생협 직원들의 역량과 민주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생협에서 조합원과 활동가, 직원은 상당히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주체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 활동가, 직원이라는 생협 3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원활한 소통 체계 필요

권순실: 저는 생협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식회사와 비교해 생협은 1인1표이기 때문에 민주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생협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시민운동단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1,000인 토론을 열었습니다. 광장에 작은 원탁을 여러 개 준비하고 둘러앉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중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술과 장비들을 갖추면 생협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생협이 규모화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대처 방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한 문서의 공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도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때, “생협은 정말 해 볼만 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고,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생협인들이 이런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네, 지금까지 조합원 협동과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생협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조합원 협동과 참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협동과 참여를 통해 생협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생협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의 협동과 참여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결국 생협이 우리 사회 복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것

김민경: 원래 협동조합이 “이건 아니야”라는 사회적 고민 속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먹을거리생협과 의료생협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생협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그 시대의 사회적 부족함을 충분함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예정된 것 같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 집의 밥상이 중요해서 생협에 가입한 사람들도 교육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적인 의식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생협이 우리 사회 복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복지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생협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협적 방식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복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움직인 일본 생협

권순실: 저는 협동조합이 가야할 길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생협의 리더들이 고민해야 할 것 역시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전 지구적인 식량 문제와 환경 문제, 빈곤의 심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협동조합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해낼 수 있는 고민들

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생협의 지향점이 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다른 기업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먹을거리 사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방식도 협동조합과 유사합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생산지 견학 등 다양한 회원활동을 통해 조직화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생협이 대응한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생협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공동체 건설 등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방법 역시 섬세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가 된다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라는 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의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전체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굉장히 유효하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남희: 저도 생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조합원의 의식과 역량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연: 그렇기 때문에 생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기 삶과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이나 강좌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생협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회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참여는 사회변화를 위한 첫 번째 실천, 협동 의식은 복지 위한 필요 조건

사회: 생협이 사회의 복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다시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적인 조직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협동조합 간의 소통을 통해 공유해나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좌담회에 오기 전에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 그리고 복지’라는 주제를 보고,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협이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와 협동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쏠린 듯합니다. 글을 읽는 분들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이 현재 각 조직마다 안고 있는 중요한 고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복지를 이야기할 때 흔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나와는 상관 없는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실천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개인적인 참여와 협동이 사회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연결을 시도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실천에 대한 논쟁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 질 텐데요, 생협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

-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협동이 흥행하는 경제적 조건

최근 어떤 언론사 편집국장과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다. 생협이 아주 잘 되는 경제적 조건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스위스나 미국 5대호 주변의 중서부 도시들처럼 아예 잘 살아서 중산층이 발달하거나 두 가지 조건인 것 같다는 얘기였다. 너무 잘 살게 되면 중산층들이 지구 생태나 제3세계 민중들의 삶 같은, 굳이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그게 진짜로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경제적인 의미로 가난한 곳에는 협동이 움직인다. 아랍 국가에 종교 기관이 직접 그런 역할을 하고, 일부에서는 아예 종교청이라는 정부기관이 나서서 기부를 받고, 과부나 실업자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다.

투기의 평창, 협동과 대척점

자, 이런 관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살펴보자.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일본이 버블 공황이 한참일 때, 힘드니까 토건으로 한 번 버텨보자고 시작한 건데 볼 것 없이 망했다. 나가노현에만 106개의 스키장이 있다. 이게 평창이 가게 될 길이다. 차이점이라면 나가노는 그래도 한국처럼 외부 투기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70% 정도로 추정되는 기획부동산 등 외부 투기로 토지 소유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시점에 투기 자금은 빠진다.

투기는 협동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데, 보통 찬반 여론이 50:50 정도로 갈린다. 가장 큰 이유가 스키 등 동

계올림픽이 많은 경우 반 생태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 생태적 스포츠 두 가지가 골프와 스키이다. 그나마 골프는 국민의 2.7%가 즐기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하지는 않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적게 즐기는 스포츠가, 스포츠 댄스 0.9%인데 스키는 그 축에도 못 낀다. 그래도 하는 건 채산성이 남아서가 아니라 호텔 등과 결합시키면서 일종의 땅 투기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장사를 하고 망하면 땅을 팔면 된다, 이건 골프장과 같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소요 금액 (단위: 백만원)

		신규	보수
경기시설	크로스컨트리	-	-
	스노보드	-	10,040
	다운힐	110,298	-
	스키점프	-	-
	아이스하키1	99,971	-
	아이스하키2	82,903	-
	피겨/쇼트트랙	117,470	-
	스피드스케이팅	144,722	-
	봅슬레이 및 투자	100,832	-
	컬링	-	7,458
선수촌	알펜시아	796,041	-
	코스타	222,031	-
메인프레스센터	알펜시아	239,960	-
	코스타	240,103	-
총계		2,154,331	17,498

(출처: 평창유치위원회)

기업연구소 등에서 추정하는 ‘경제적 효과’는 ‘비용+편익+간접효과’라서 그냥 해보는 말이고, 진짜로 정부절차에서 예비타당성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데서 공식 절차로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비율로 계산한다. 메뉴얼에 따라서 평창 올림픽을 계산해보면 보나마나 1미만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비용편익 비율을 강원도가 제시 못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토건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중앙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편법으로 예비타당성평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불법이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는 법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자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국가의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1)

국가(올림픽)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2000시드니 올림픽)	4	9	6	12	7	7
미국(2002솔트레이크 올림픽)	1	1	1	1	1	1
그리스(2004아테네 올림픽)	NA	NA	36	36	42	52
이탈리아(2006토리노 올림픽)	NA	53	48	42	46	50
중국(2008베이징 올림픽)	NA	31	18	15	17	20

(출처: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올림픽 개최국가의 국가경쟁력 변화 추이(2)

국가(올림픽)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호주(2000시드니 올림픽)	5	7	10	14	10	16	19	18	15
미국(2002솔트레이크 올림픽)	2	1	2	2	2	1	1	1	2
그리스(2004아테네 올림픽)	36	38	35	37	46	61	65	67	71
이탈리아(2006토리노 올림픽)	26	39	41	47	47	47	46	54	58

(출처: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평창의 미래

이건 절차에 관한 얘기이고, 내가 생각하는 평창의 미래는 나가노보다 더 어렵다. 일단 강원도 자체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인데, 2018년 전에 강원도에 디폴트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지불불능 상태에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격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8년 이전에 한국 경제에 ‘딥’이라고 부르는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오게 된다. 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기관들 방어하기도 힘들 텐데, 강원도까지 지켜주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 효과는 토건사업이 생각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도 도민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1인당 지역소득으로는 전국 평균이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그 다음은 부산, 이런 곳이다. 아파트 토건은 부산이 가장 심했고, 바로 그 세계대회가 추진된 곳은 대구이다. 그 기간 동안 대구는 결국 1인당 지역소득 꼴찌를 기록했다. 강원도에는 별 국책사업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강원도가 평균 소득이라도 유지한 것 아닌가? 5조 원 이상 쏟아 부으면서 토건으로 가면 지금의 대구 자리를 강원도가 차지하게 될 위험이 있다.

자본과 결합된 스포츠 소비니즘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고, 중국보다도 심하다. 메달 연금은 동구국가들이 국가주의를 강화시킬 때 쓴 정책인데, 중국도 일시금으로 바꾼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메달 땀다고 연금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일본을 큰 차이로 이겼다. 같은 기간, 체력지수 같은 걸 보면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전 연령대, 전 성별에 걸쳐 체력이 약하다.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스포츠 소비니즘의 대가가, 결국 ‘국민체력 저하→의료비 지출 증가→의료보험 위기→예방 의학의 약화→영리병원 추구→의약품 슈퍼판매’,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한 나라당 눈에서 보면, 스포츠 소비니즘을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돈 버는 병원 많이 만들겠다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협동이라는 요소가 경제를 합리적으로 만든다. 투기와 토건, 쇼비니즘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길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스포츠가 나쁜 게 아니라, 토건이 나쁘고 쇼비니즘이 민족주의 아니냐고 하지만, 자본과 국가가 활용하는 쇼비니즘은 지나치면 이성을 마비시킨다. 국제대회만 보고 뛰는 축구와 국내리그가 살아있는 야구의 차이와 같다. 축구를 죽도록 응원하면 축구가 좋아지나? 결국 승부조작만 나오는 거 아닌가? 쇼비니즘과 결합한 메가 이벤트가 지금 국내 축구리그와 똑같다.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 들어가며

2010년 3월 제정된 지 12년 만에 생협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제정된 이후 바로 개정 논의가 나왔으니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생협법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생협이 요구했던 생활용품의 판매 허용 등 생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생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생협의 조합원과 임원, 직원들이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활발히 운동해 온 결과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농상생, 환경 등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한 참여, 지역 커뮤니티의 재창조 등 일상 활동을 통한 참여로 생협이 주도한 이슈에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다. 생협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도 생협이 일구어 온 성과와 국민들이 생협에 거는 기대가 높아졌기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정만으로 법 개정의 취지가 자동 달성될 수는 없는 법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속에서 영리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사업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사업체이다. 법 개정으로 부여된 기회를 생협의 사업력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법 개정에 기울인 온갖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더 나아가 생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고,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협의 경영진과 활동가들이 기존의 방식이나 운영 수준에 안주한다면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이번 생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회 속에 위기

가 있다는 관점으로 한층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개정된 생협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협동조합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금 생협 활동가들의 의무일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과 생협의 과제

1) 생협법 체계의 변화

생협법은 기존 23개 조문에서 88개로 조문 수가 4배 가까이 늘었다. 신설된 조문들을 추가한 취지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부 조문은 기존 생협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분리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62개 조문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협동조합 운영의 구체화”인데 이전에는 주로 정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조항으로 추가되어 생협 운영의 법 근거를 강화하였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사 생협의 난립을 단속하기 위한 조문으로는 명칭, 성격, 잔여재산 처리 등이 강화되었고, 특히 다른 협동조합 관련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타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도 그동안 생협이 활동한 결과물이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을 제9조로 명시한 것도 생협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생협의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협의 연합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활동의 대표성을 강화한 부분이다.

<표 1> 생협법의 주요 개정 내용

분류(62)	조문
협동조합 정체성 관련(4)	제4조(명칭), 제6조(성격),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의료생협항목)
협동조합운동 활성화(2)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생협 육성 관련(1)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협동조합 운영의 구체화(22)	제3조(주소), 제22조(설립등기),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 제28조(총회의 특별의결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5조(임원의 책임),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9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2조(이사회에 의결사항),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53조(해산), 제54조(해산의 등기), 제55조(청산인)
협동조합 회계의 구체화(3)	제17조(경비 등의 부과 징수),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원관련 조문 구체화(6)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가입),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지분환급 청구권)
연합회 관련(13)	제57조~65조,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7조~69조
전국연합회 관련(11)	제70조~80조

2) 생협 사업범위의 확대

개정된 생협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생협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개정 전 생협법에는 제10조 제1항의 1호로 농수산물과 축산, 임산물 및 환경

물품 만을 적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생협법에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 전체를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1차 상품과 그 가공품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생협 사업범위의 확대

개정 전 생협법	개정 생협법
제10조(사업의 종류)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45조(사업의 종류)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또한 의료생협의 사업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사업이 특정화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을 받는 것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사업 범위의 확장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생협이 운영하는 대다수 매장은 소규모로 다양한 제품을 매장 내부에 진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장을 규모화하거나 온라인 판매 혹은 카탈로그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농축산물과 환경물품의 판매는 그동안 도농상생 및 일상적 환경운동이라는 생협이 주도하는 이슈와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운동과 사업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동안 생협이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던 물품정책이 가전제품 등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및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셋째, 물품정책에 적합한 공급자를 발굴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존 영리 기업과 생협상품에 대한 공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하는 방식과 2차, 3차 산업에서 생협 정신을 이해하는 신규 공급자를 육성하는 방식을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이쿱생협의 괴산 클러스터사업의 입주 업체 범위 확대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3)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

제9조의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조문은 제45조 사업의 종류와 연결되는데, 시행규칙 4조에서는 법에서 제시한 공동이용시설을 “보육시설, 양로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런 시설 중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시행령 3조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대학생협이 이 조문의 혜택을 직접 볼 수 있지만, 법 취지로 볼 때 공공단체에 속하는 사립대학이나 지자체 등과도 협력 사업을 수행할 경우 생협 전체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협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 환경활동의 전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부 혹은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협은 이미 공공유형으로 설립된 지자체 소유의 산지선별장(APC)을 운영하는 등 제9조의 취지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의 협력 사업이 조합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게 되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수가 있다.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만드는 것과 함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4) 생협의 운영 정비 및 정체성의 강화

지금까지 선현들이 남겨준 가르침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가 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개정 생협법은 생협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나 법적 강제도 많아졌다.

생협의 정체성과 관련된 조문은 물론 의료생협에 해당하는 잔여재산 분배의 금지와 같은 내용부터, 선거운동의 제한이나 서류 비치의 의무 등 타 협동조합 수준으로 구체화된 운영규정들이 그렇다. 자칫 생협의 자율성과 신의성실의 활동을 불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85조부터 제88조의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규정이 구체화되어 생협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었고, 비조합원 이용의 금지 등 조항이 삽입되어 해석에 따라 정부가 생협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생협은 운영상의 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없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조합원 참여 활동을 해야 하겠다.

5) 생협의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연합회 활동

기존의 생협법에는 조합의 설립 근거만 있고, 연합회나 전국연합회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개정된 생협법에서는 연합회의 설립과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포함되어 법적 조직으로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개정 생협법 제3장은 연합회를 다루고 있는데, 제57조와 제60조를 보면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5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사업구역이 전 국민 경우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아이쿱, 한살림, 여성민우회 등 물류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회가 법적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구역을 적정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구매생협과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이 함께 연대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연합회의 사업은 제65조에 보면 1) △지도, 지원, 연락, 조정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의 조성기능과 2)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 가공, 제조, 판매 △공제사업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 운영 등의 연합사업기능 3) △보조금의 교부, 교부 알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의 위탁사업 등 협력사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연합사업 기능을 중심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였지만, 앞으로는 제8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단위 연합회 혹은 협의회 설립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국연합회는 국가와의 연계가 주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연합회를 통해 3)의 협력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레가협동조합이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의 사례를 볼 때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협동조합 전체의 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데 필수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이 먼저 지역연합회를 구성하고 주로 1) 조성기능과 3) 협력사업 기능을 앞서서 토대를 닦아 나간다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이다.

6)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공제사업

연합회 사업 중 주목할 사업은 제65조 1항 3호인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다. 공제사업은 쉽게 말하면 보험사업인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다. 상호금융이 은행사업과 같지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정 생협법에서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연합회는 그렇지 않은 연합회에 비해 출자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는 일반 연합회는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데, 공제사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국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려면 3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는 해외사례나 농협의 공제상품을 미루어 볼 때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재해보장, 생명공제 등 일반적인 보험 상품부터, 자영업 임시휴업공제, 지역통화, 자녀생활 공제 등 그동안 보험회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공제상품을 만들 수 있다. 공제사업의 법제도적 정비를 생협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면 첫째, 우선 조합원에게 공제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고, 둘

째, 조합원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공제수요를 파악하고, 셋째 공제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설계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넷째, 납입된 공제대금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제를 연합회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력을 갖추고 공제상품의 개발, 교육, 운영지원, 재공제사업 등을 통해 사업 실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한다.

7) 전국연합회의 조속한 설립 필요

개정 생협법 4장은 전국연합회 관련 조문이 정리되어 있다. 제72조에 따르면 전국연합회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수가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1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전국연합회는 실질적으로 1개소만 만들 수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이쿱 등 4대 생협연합회 소속 생협조합 수는 118개소이며, 의료생협은 인가 156개소에 사고 의료생협이 8개소로 148개소가 운영되며, 대학생협은 22개소로 인가조합 수는 296소이므로 148개 생협이 설립 동의해야 전국연합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4대 연합회와 대학생협연합회, 의료생협연대가 모두 참여해야 전국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전국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과 함께 제77조 1항 3호 “조합 등에 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6호 “전국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과, 2항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생협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전국연합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특히 개정법의 기회가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

생협법이 사업범위를 생활용품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유사 의료생협의 사례

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적 마인드가 없는 업자들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 쉽다. 예를 들어 다단계 판매업체 등이 ‘무늬만 생협’을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생협이 그동안 쌓은 좋은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정부의 감독이나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실효성도 없다. 따라서 생협의 철학과 운영원리를 국민들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하며, 위의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해석하여 정부의 생협 인가에 전국연합회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생협의 자율적 규제를 제도화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8) 생협법 개정에서 유의할 사항

제46조 사업의 이용에서 조합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홍보 또는 재고 물품의 처리 등”의 요건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생협법과 다른 점은 ‘홍보’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6일 공포된 시행규칙 5조 2호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 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9호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은 매장 개장일부터 1년)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생협의 홍보와 조합원 가입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46조 3항은 특히 의료생협에 대해 공급가의 50% 수준에서 비조합원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여 의료생협의 공공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었다.

9) 협동조합 운동의 주도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문은 “조합 등은 다른 조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

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들의 의지와 조직문화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 조문을 생협법에 반영한 것은 생협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을 주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한살림의 역할이 보여주는 사례나, 아이쿱의 활동으로 언론에서 협동조합을 홍보하는 사례 등을 볼 때 협동조합정신에 투철한 생협과 생협 활동가들의 존재는 협동조합섹터 전체의 보배와 같은 존재다. 최근 논의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지원, 지역단위별 이종 협동조합 간의 협의 및 공동 활동의 전개 등을 생협의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마무리하며

생협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초기의 어려움을 많이 줄였다. 하지만 이전의 과제를 해결하더라도 큰 꿈과 비전을 가지면 새로운 과제는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다.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주요 항목별 과제들이 충실하게 해결되어야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여전히 개정 생협법은 많은 기회와 숙제를 생협 임직원에게 던져주고 있다.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는 것은 생협 활동가들의 몫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생협은 진부해지고 그동안의 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생협의 협동조합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1. 유엔의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 배경

2009년 12월 18일 유엔(UN)은 제64차 정기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로 지정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에 2012년을 협동조합이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널리 알려, 협동조합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유엔결의 A/RES/64/136)을 채택했다.

유엔은 1959~60년 세계 난민의 해를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세계○○의 해’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유엔은 2000년 채택된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¹의 실천을 위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세계○○의 해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은 유엔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면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토착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빈곤퇴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엔은 협동조합의 이런 활동이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결의안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퇴치,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

¹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 세계의 빈곤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2015년까지 다음의 8대 목표를 실행하기로 동의했다. ①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③ 남녀평등과 여성 권의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 건강 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²의 권고문을 다시 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유엔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슬로건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을 채택하고 2012년 한해를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조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경제발전과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널리 알릴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필요에 대처하고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에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고³

² “사회개발과 협동조합(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무총장이 격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발표하는 협동조합 관련 보고서.

³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주적인 인적결사체인 협동조합을 형상화한 것으로 7명의 사람은 협동조합의 7대원칙을, 이들이 떠받치고 있는 상자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을 의미.

2.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국제협동조합연맹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하 ICA)은 유엔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2012년 사업의 주요 파트너이다. ICA는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200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ICA는 창립 100주년이었던 199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⁴을 기울였으나, 근 20년 만에야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뒀안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경제적 약자들의 대안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이, 21세기 자본주의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대안으로 다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엔은 60여개에 달하는 세계○○의 해를 지정해 왔으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거나 당해 연도에 반짝 주목을 받는 것으로 그친 사례가 많았다. 유엔이 산하기구를 통해 해당 세계○○의 해가 지향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력과 재원을 갖춘 조직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ICA는 2012년 행사를 종착점이 아니 출발선으로 생각하고, 2012년의 기본 목표를 협동조합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는 한해로 설정했다. 그리고 2012년의 결과물로 2020년까지 협동조합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이 소유한 가치에 바탕을 둔 성공적인 사업체임을 일반대중에 각인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펼칠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일반기업들과 달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많은 협동조합 사례를 제시하면서 천민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임을 강조할 것이

⁴ 1988년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9차 ICA 총회에서 당시 소련의 센트로소유즈 협동조합에서 I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협동조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유엔에 199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을 촉구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을 유엔 관용의 해와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의 해로 지정했음.

다. 또한 협동조합이 윤리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가치 추구 기업이자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비즈니스 모델임을 일반대중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것이다. 대중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해 성공적인 협동조합, 조합원, ICA의 역할을 노출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ICA는 협동조합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널리 알릴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세대인 것을 감안하여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⁵.

3.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한국 협동조합에 주는 의미

첫째, 2012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그 자체로 협동조합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 단체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조직 개념에서 이들을 아우르는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반대중들에게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구호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협동조합이 정부나 큰 조직에 의해서 농업인이나 중소기업 등 특수한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 누구나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변화는 경제개발과 정에서 하향식으로 조직화되고 일부 사회 엘리트에 의해서 조직된 한국협동조합의 틀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협동조합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사업별 협동조합 조직이 아닌 보편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농업협동조합의 해’나 ‘세계생활소비

⁵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관련 정보와 활동 상황은 www.2012.coop 에서 확인 가능.

자협동조합의 해'가 아닌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조명이 우선될 것이며, 협동조합 전반에 관한 논의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협동조합의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한국식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협동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유엔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면서 각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사회 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과 관련 부처(농림수산물식품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만 일부 관료들의 협동조합, 그것도 사업과 관리감독에 대한 이해만 있을 뿐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된 틀에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어떠한 정책목표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되고, 협동조합을 진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개별협동조합법 체계에서 모든 협동조합을 아우를 수 있는 협동조합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겠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사항들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생겨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자연자원보다 인적자원에 의존해 온 한국사회 시스템에서, 인적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 경제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

첫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개별 협동조합의 홍보의 장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부족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인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자는 정규 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담자고 하지만, 기존 협동조합 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아직은 요원하다.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물로 비조합원들,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한다.

현 ICA 회장인 영국의 폴린 그린 여사만 해도 처음 협동조합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자녀가 영국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협동조합캠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비조합원,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하다 하겠다. 교육은 체험과 결부되어 생활에서 협동조합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교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개별 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연대를 통해서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클럽인 FC바르셀로나나 레알마드리드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눈앞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새로운 협동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제도적 법적 장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나 대학생들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은 이미 보편적인 협동조합모델로 주거문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시도로 국내에서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보건협동조합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기존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규모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한국협동조합이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협동조합들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ICA 회원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2009년 출범되었으나 국내의 모든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깔아준 명석이라도 이용해서 협동조합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모든 협동조합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협동조합의 힘을 필요로 하는 해외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시

도가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하겠지만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저개발국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지원해왔던 유럽 중심의 서구협동조합 모델보다는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제적 간극이 그나마 덜한 한국의 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유엔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이유에는 유엔 혼자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해결사로서 자조적인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을 그 대안으로 선택했고 특히 전 세계에 성공한 많은 협동조합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 



* 92~3쪽에 바르샤와 협동조합의 7원칙 해설 참조(편집자 주)



바르사: FC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세계 최강의 축구클럽인 FC바르셀로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FC바르셀로나는 1899년 11월29일 자연인으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 스포츠협회로 설립되었다. 당시만 해도 스페인 대부분의 스포츠클럽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었다. 물론 1990년 재정이 악화된 일부 클럽이 스포츠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FC바르셀로나를 비롯해 레알마드리드 등 다수의 클럽은 계속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클럽의 사전적 정의는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일반 영리기업보다는 협동조합 형태가 더 어울린다. FC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지를 ICA 협동조합의 7원칙에 따라 재정리해보았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누구나 FC바르셀로나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로니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2010년 현재 약 17만5천명의 조합원(socios)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3만명은 스페인 국외 거주자이다. 연간 조합비는 약 27만원 가량이며 조합원은 연간 회원권을 최하 1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2) 민주적 관리의 원칙

조합원은 클럽 이사과 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003년 22년간 회장직을 맡아오던 전임 회장이 클럽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회장직에서 퇴위시키고 현재의 6년 연임제로 변경시킬 정도로 민주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클럽은 조합원 다수의 동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지만 잔여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청구권은 없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 카탈로니아 주정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다.

4) 자율과 독립의 원칙

조합원은 클럽 경영진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투표를 통해 물을 수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상 재원조달은 조합비 증액이나 상업적 수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식시장이나 외부자본 영입을 통한 조달은 허용이 안 된다.

5)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클럽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필요할 때 조합원 재단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

FC바르셀로나는 배구, 럭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승인을 통해 수익의 0.7%를 FC바르셀로나재단에 출연 국제협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유니세프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다.

『바르사: 팬 소유권과 축구의 미래』(데이브 보일)에서 발췌
www.uk.coop/barca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제2,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주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건설사의 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하느라 만들어진 두 법은 삶의 터전이 곧 목숨인 이들에게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법이다. 두 법 이외에도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설관련 법들 또한 철거위기로 내몰린 생명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같은 법들은 기존의 생명들이 이해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설령 이해한다 할지라도 보호받기는커녕 건설사의 무기로만 이용될 뿐이다. 60억원대 뇌물 제공 사건으로 잠시 개발이 중단된 서울 동작구 상도4동의 철거현장을 예로 들어보자. 상도4동 일대는 원래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의 관리자인 ‘지덕사’(이사장: 이관수) 소유의 땅이었다. 1965년부터 이 일대에 도지세를 내는 무허가 건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곳에 개발관련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건 2004년의 일로,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땅주인인 지덕사와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지덕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금호건설이 내세운 유령회사 세아주택이 끼어들면서 상도4동의 재개발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덕사와 세아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대신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영개발이어서 지덕사가 세아주택에게 땅을 팔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세아주택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보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똥배가 맞은 지덕사와 세아주택은 추진위를 와해시키고 ‘주택재개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취소'등의 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집을 강제 철거하여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해버렸다. 그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덕사는 2008년 3월 최종적으로 세아주택에게 땅을 팔았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이다.

60억원대 뇌물 제공 사건은 그 무렵에 터졌다. 한 지역을 개발할 뿐인데, 도 대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기에 시행사인 세아주택은 60억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쏟아 부었는가. 뇌물사건으로 현재 금호건설의 유령회사 세아주택 사장과 지덕사 이사장, 그 외 몇몇 수하들은 감옥살이 중이다. 반면 발가벗겨진 채 길바닥으로 패대기쳐진 상도4동의 철거민들은 몇 년째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 중이다.

용산4구역의 대참사

2009년 1월20일 대형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용산4구역 개발로 인해 당시 한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금은 무려 2조4천억원에 이른다. 처음 한동안 건설사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정법 47조의 의무조항대로 상가세입자들에게 영업보상 3개월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의 의무도 이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시설투자비를 반으로 후려 지급하고자 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건설사는 편리에 따라 도정법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 법을 지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건물과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철저히 도정법을 따랐지만,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3분의2이상 매입하면 나머지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법안은 철저히 지켰다. 반면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영업보상 4개월(용산참사 이후 1개월이 늘어났다)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생계터전을 빼앗긴 채 졸지에 단애절벽으로 내몰리게 된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들은 반발했다. 그들은 정당한 배상이 있기 전에는 현재 영업 중인 가게

를 비울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언제든 권력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건설사의 답은 빨랐다. 용산참사가 있기 6개월 전인 2008년 6월13일 건설사는 조합의 이름으로 상가세입자들에게 정중한 척하지만 노골적으로 빨빨한 공문을 보냈다.

“사업구역 내 세입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합의 동의 없이는 토지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제 즉시 이주계획을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주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 명도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피고인 세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일부 외부 사람들의 선동에 속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같은 해 8월에도 공문을 보냈다.

“9월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금년 8월31일까지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째 공문을 보낸 뒤부터 용산4구역에선 용역깡패들의 노골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 가공할 폭력에 맞서 버티던 상가세입자들은 땅 위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상가세입자들이 택한 최후의 길은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짓고 하늘로 오르는 길이었다. 그 뒤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선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명동3구역의 어제와 오늘

명동3구역 카페마리에서 강제철거에 맞서 농성 중인 상가세입자들은 11세대이다. 이네들은 자신들의 생계터전인 황소식당, 낙원화랑, 옛날국수, 이모낙지, 오징어식품, 가야삼계탕, 링크노래방, 모퉁이식당, 부산오뎅, 한잔하자, 카페마리에서 2011년 4월에 쫓겨났다. 쫓겨날 당시 건설사가 상가세입자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은 영업 손실 4개월 치가 전부였다. 돈으로 환산하면 37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이 전부다.

명동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명동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두 개의 유령회사를 내세우고 있다. 주)명례방과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식회사가 그것이다. 주)명례방과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식회사는 명동 재개발사업지역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3, 4구역 중 3구역과 4구역은 재개발사업 인가가 난 상태로,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다. 현재 11세대가 농성 중인 카페마리 일대는 3구역에 해당한다. 2구역의 경우는 아직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은 내지 않았지만 이미 구역 내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식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다.

두 유령회사 중 명동3구역 시행사로 등록돼 있는 주)명례방은 지분의 44%가 대우건설의 소유로 돼 있다. 대우건설은 주식담보 형태의 직접대출로 60억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추가로 주)명례방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신탁을 담보로 추가 대출 가능한 2천억원의 자금까지 합산한다면 대우건설이 명동3구역에만 들이는 비용이 4천억원에 이른다. 명동일대 재개발사업이 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는 낭설이 아닌 것이다.

그렇듯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대우건설의 행태는 딱할 정도로 치졸하거나 이게 사람집단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3구역 상가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만 던져준 행태부터 그렇다. 한 가족의 일생이 걸린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버리는 꼴은 법 이전에 도덕적 살인에 해당한다. 그 같은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 어차피 건설사를 위한 법인 도정법조차 철저히 비껴갔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대우건설은 명동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개인의 건물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시 도정법 47조를 들먹이자면 영업보상 4개월 치,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참으로 알뜰한 술수를 도모한 것이다. 어쨌든 PF(Project Financing, 건축지원자금)자금으로 건물매입을 끝낸 대우건설로선 이제 남은

건 속전속결뿐이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남길 수 있다. 대우건설은 즉각 상가세입자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빨리 나가라, 재계약은 없다, 이사비용 정도는 던져주겠다”는 식으로 상가세입자들을 내몰기 시작했다. 상가세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서 반발했다. 도정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도 대출과 사채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영업재개가 불가능한 판에 알몸으로 내쫓다니! 결코 대우건설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약이 부동 아닌가. 자본과 권력, 용역깡패라는 삼각편대를 동원한 대우건설 앞에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네들은 지난 2011년 4월, 영업 중이던 가게에서 속절없이 쫓겨났다.

쫓겨난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은 그 길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건 대우건설이 원하는 바다. 쫓겨난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은 그 길로 노숙자가 되었다? 그건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놓고 배를 두드리는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바다. 쫓겨난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은 그 길로 파출부 같은 일용직 노동을 찾아 떠났다? 그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고자 하는 권력이 원하는 바다.

쫓겨난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은 건설자본과 권력, 깡패들에겐 어처구니없게도 노숙농성의 길을 택했다. 싸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권리주장은커녕 자신의 것조차 지켜낼 수 없는 약탈과 야만의 세상에 당당히 맞서기로 한 것이다.



(출처: 명동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그리하여 쫓겨난 다음날부터 시작된 명동3구역 11세대 상가세입자들의 농성은 8월말 현재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다른 철거농성장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파란만장한 농성이다.

온몸에 문신을 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늘 근거리에서 있었다.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이 농성을 시작한 지 531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숙농성 대신 카페마리로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두리반 협상 타결이 6월8일이고, 부직포로 막아놓은 카페마리로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한 게 6월14일부터니 점거농성만도 근 3개월에 이른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시종 폭력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지난 8월3일 새벽에는 용역깡패 200여 명을 동원해 모든 걸 박살내기도 했다. 그러나 도덕적 살인자인 건설자본과 죽음을 맞은 자와의 싸움은 늘 이제부터다. 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죽음을 맞은 11세대 상가세입자들에게 물려설 곳이란 도대체 없다는 얘기이다.



(출처: 명동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악법에 맞서는 길

악법에 맞서는 길은 극한의 삶을 강요한다. 아니 강제철거에 맞서는 길이 순탄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버림받은 생존권, 인권유린, 개를 때도 지탄 받는 시대에 인간을 때는 야만의 폭력이 집중되는 곳, 카페마리에서 보듯 강제철거 현장은 그런 곳이다.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속전속결을 원한다. PF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터라,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연의 강행군을 한다. 물론 PF자금이라는 게 특별한 담보도 없이 건설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보고 빌려오는 대규모 자금이다 보니, 건설사들은 이래저래 한국사회의 황태자임이 분명하다.

어쨌든 건설사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속도전을 치르기 위해 거의 언제나 철거용역업체를 끌어들인다. 허가받은 조폭집단인 철거용역업체는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 “법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강제철거에 맞서 법이 잘못됐다고, 생계타전을 보장하라고 철거민들이 외치면 그들은 짓밟개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묘한 과신 탓인지 패고, 집어던지고, 때려 부수는 것조차 합법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건 역설이다. 범법자들을 징치한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철거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낼수록 더 많은 돈을 절 수 있다는 당근 때문일까? 여하튼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조차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원래 자신의 추함을 감추기 위해 향유 남용하는 수법이 남을 때도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꼭 그렇다.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 수천억원대의 PF자금 지원(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그 좋은 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도정법이라는 명분 확실한 법적 지원처럼 건설사들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황태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열 배, 스물아홉 배(홍대 앞 두리반 일대를 매입할 때 7평짜리 부동산중개소를 실제로 그렇게 매입했다)까지 웃돈을 들여 개발 부지를 매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상도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상가세입자들을 내몰 때는 냉혈한이 된다. 영업보상이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도 없이 쫓겨나게 된 상가세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건설사들은 폭력은 기본이고, ‘권리금’ 얘기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다. 권리금! 말 그대로 그것은 상가세입자들의 권리지만, 달리 보면 상가세입자들의 치명적인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건설사나 건물주들은 그 약점을 들고 나온다.

“권리금? 언제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 적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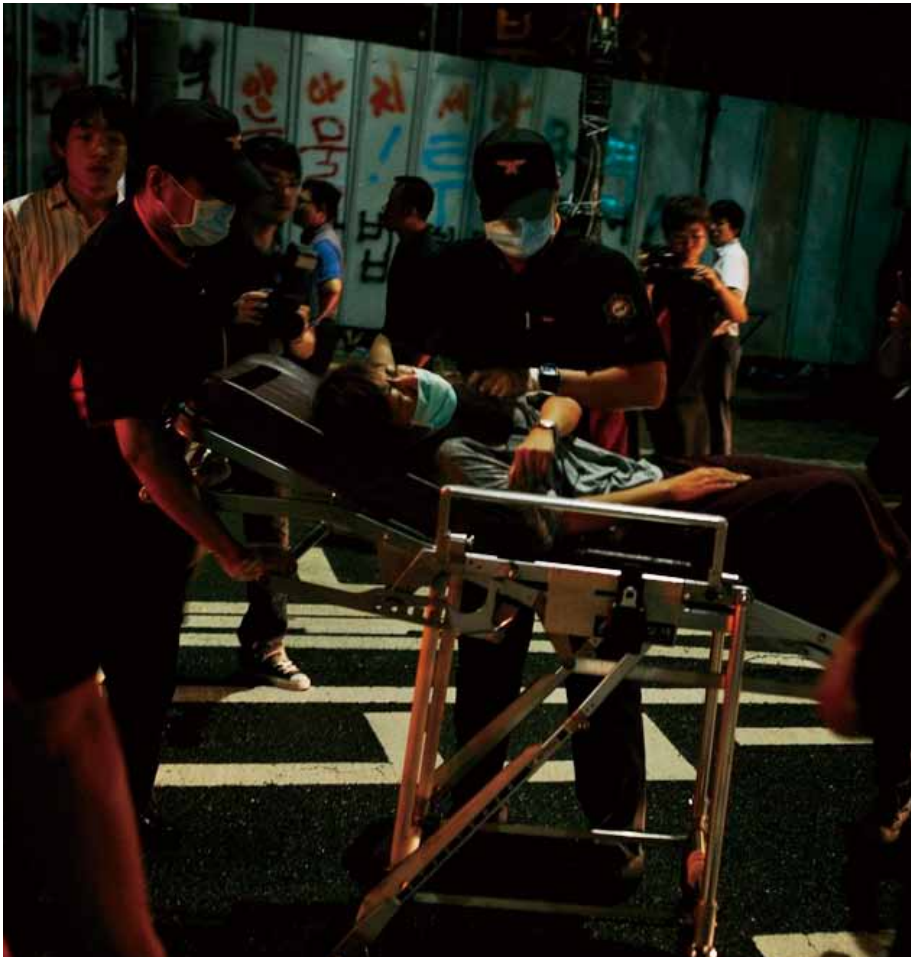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누누이 권리금을 줬다.

홍대 앞에 있는 SP빌딩을 예로 들어보자. SP빌딩은 건물가치가 7백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곳이었다. 한때 상가세입자들은 SP빌딩에서 점포를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SP빌딩에 들어간 상가세입자들은 전기시설을 하고, 주방을 꾸미고, 환기시설을 했다. 고군분투의 홍보기간을 거쳐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영업을 했으나 적자운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문을 닫았다. 적자운영을 하는 동안 SP빌딩 측은 월세를 깎아주거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적이 결코 없었다. 만약 상가세입자들의 노력으로 손님이 모여들어 장사가 잘 됐다면 SP빌딩의 가치는 줄지에 9백억, 1천억원대로 뛰었을 것이다. 건물주는 권리금 그 이상의 돈을 상가세입자들로부터 챙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가세입자들은 죽었다. SP빌딩도 죽었다. SP빌딩은 끝내 경매로 나왔다. 경매가는 5백6십억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권리금이란 그렇다. 상가세입자들이 손님을 끌어 모아 점포를 살리면 당연히 건물도 살아난다. 상가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주장할 때는 건물의 가치도 상승해 있고 월세도 상승해 있다. 소위 권리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몇몇 부도덕한 상가세입자들로 인해 권리금 문제 자체를 거론할 수 없다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인정해야 한다. 권리금은 상가세입자들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강한 연결부위를 인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구멍만 뚫려 있는 건물에 들어가 열흘이고 보름이고 점포를 꾸미는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 상가 세입자들은 하수구부터 화장실까지, 하나하나 손 보고 나서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장사

라는 게 하루아침에 빛을 보는 게 아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나긴 적자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 모진 노력을 다한다. 그 같은 자본 투여와 노력 끝에 점포를 살려냈다면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겨우 흑자를 낼만 하자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하거나, 건설사가 매입했으니 알몸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가히 도덕적 살인이다. 카페마리의 경우 처럼 강제철거에 맞서 농성하는 상가세입자들 대부분이 그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철거농성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출처: 명동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제라도 제발 정치권이 나서서 막개발을 종용하는 건설법이 아니라, 기존의 생명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건설법으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도정법만 보더라도 개발관련 법들은 대부분 건설사들을 살찌우도록 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개발지역의 생명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이지만, 개발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에겐 구멍 송송 뚫린 그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무려 50여 가지에 이르는 건설관련 법부터 단순화시키고 뜯어고치는 일이 급하고 절실하다. 기존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같은 참극이 일어났는데도 손볼 엄두를 못 냈겠는가. 그러나 그 길 말고는 달리 길이 없지 않은가.



(출처: 명동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아울러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비용역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지난 8월3일 명동의 카페마리에서 문신을 한 용역들이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세입자들을 패대기치는 폭력을 저질렀다.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은 기존의 생명을 몰아내는 쪽으로만 방향을 정할 뿐 대화를 통한 선의의 방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일본 동경의 롯폰기 힐스(3만5천 평)는 17년이란 세월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발을 이루어냈다. 개발보다 급한 건 기존의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을 롯폰기 힐스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영업권을 5년만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권리금에 대한 기준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많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위해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사회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 2011년 9월8일, 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 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편집자 주)

망국적 복지론을 반박하는 적절한 안내서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우리사회는 요즘 복지문제로 떠들썩하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그렇고,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요구나,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쏟아내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들이 그렇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30~69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생 100살 시대 국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3.3%가 90살 또는 100살 이상까지 사는 현상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38.3%가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0.6%는 ‘빈곤, 질병, 소

외, 고독 등과 같은 노인문제’, 24.1%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한 것을 보면, 현실은 복지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복지란 질병, 노령, 실업,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예방과 보장, 사회적 돌봄과 육아·교육·노동 보호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편히 살 수 있는 사회적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정책을 운영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복지에 대한

1 오세훈 전 서울시장(편집자 주).

인식은 미래 복지에 대한 기대마저 우울하게 만든다.

서울시장¹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의 일변을 보여주시고, 대통령은 그리스가 복지를 확대한 결과 경제위기를 맞았으며, 경제위기의 본질을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 호도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은 9%로 평균 23%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 견주면 형편없는 수준인데도 말이다.

내가 하면 보편적 복지, 남이 하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되는 풍토에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적절한 안내서가 될 듯하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이 경제위기 때 오히려 적극적인 복지지출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실현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목표로서 복지보편주의가 아닌, 국민의 일상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복지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공공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세 살짜리 딸이 있는 평범한 엄마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딸 미아가 태어나면서 4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얻어 집에서 미아를 돌봤고 중간에 60일은 남편 스텐이 돌봤다. 출산휴가 동안 둘 다 정부에서 월급의 약 80%를 출산보험으로 받았다. 그리고 아동수당 1,050크로나를 다달이 받고 있다. 마리아는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직업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비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나 임금의 3% 혹은 최고 1,250크로나를 넘지 않으며, 초과하는 운영비는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오후 5시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 아이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아이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중 한사람이 조퇴를 할 수 있고, 미아로 인한 질병휴가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질병휴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본인 병가 급여와 같이 임금의 약 80%에 이른다.”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작가는 스웨덴을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를 더듬어가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에 비유하고 있다. 스웨덴이 이룬 성과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기회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사회이고, 사회제도적으로 개인 자유의 신성함을 보장하지만 어느 특정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힘에 있음을 강조한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었지만 스웨덴은 여전히 가장 앞서가는 복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통합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고유한 보편주의적 복지모델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환경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국민의 집’으로 정의한다. ‘국민의 집’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이다. 1921년 사민당 국회의원 한손이 처음 사용하여 미래사회비전으로 제창한 개념이다.

“집(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알아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에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의 기본 목표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져야하고, 모든 국민이 기회의 평

등을 누리려면 보편적 복지정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스웨덴 정부의 믿음이 이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

2부에서는 1913년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양로원 제도 도입과, 196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현대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에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돌봄과 의료, 평생교육과 주택보장 및 노동보호 정책 등이 포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정책 등 분야별 행정체계와 역사적 배경, 형성과정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읽어보는 일도 흥미 있는 탐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부는 스웨덴식 복지정책이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자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정신은 공동체 내의 참여, 존중, 합의 문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 사람들은 총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별다른 존칭 없이 ‘너’로 일관할 정도로 평등한 일상문화의 관행이 유별나다고 한다. 또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어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이라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고, 직장이나 각종 팀 토론에서도 “야 틱게르 앳트(jag tycker att, 내 생각에는)”를 개인의 경험적이고 개별적인 의견으로 반드시 존중한다. 동의하지 않을 땐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 그 뿐, “아니야”, “틀렸어”등으로 반박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과 합의의 문화가 일상생활에 내면화 되어 있다.

이 책은 스웨덴의 정치와 공동체 속에서 합의된 철학과 방법상의 문제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의 집으로 향하는 달팽이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스웨덴 여성운동 초기인 1972년 현대미술관 전시회장 벽에 게시된 글은 마치 2011년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코문²과 직장 등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탁아소의 형편은 어떠하며 얼마나 많은 병원이 통증 없는 출산을 위해 노력합니까? 우리는 다수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야 틱게르 앳트(내 생각에는), 지역농산물을 살리고 대안적인 소비를 하는 손길이, 공정하게 무역하고 여행하는 손길들이 희망이다. 낙동강 내성천에서 파헤쳐지는 강을 지키기 위해 ‘땅 한 평 사기’운동에 동참하는 발길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 강정마을에 모여드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관심이 희망이고,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반대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올라타는 발길들이 희망이다. 

²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코문의회, 코민위원회, 한국의 구청에 해당하는 코문행정사무소로 구분되며 내각제를 채택한 스웨덴은 정치, 행정기구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코문이라고 통칭한다.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폴란드의 협동조합운동 논쟁

폴란드 협동조합 섹터는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의 쇠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치명적인 법령의 2개 조항이 도입되는 걸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해당 법령은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과 달리, 협동조합 운동의 운영 체계에 대해 정부의 관료적 개입을 허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 집권당 국회의원들은 폴란드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약화시키려 압력을 넣고 있지만, 협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는 ICA 폴린 그린 회장과 유럽협동조합 펠리스 스칼비니 회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부딪치고 있다.

2011년 6월 중순 폴란드 정당과 정부에 대한 로비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두 사람은, 주택협동조합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국회의 자세 전환 촉구를 위해 유럽 의회에 서한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으며, 폴란드 협동조합 섹터 지도자들과 연속 회의를 열었고, 폴란드 정부와도 회담을 가졌다.

ICA 회장, 협동조합 정책 체제 확대 개방을 EU에 요청하다

ICA 폴린 그린 회장은 유럽연합에 협동조합 사업 모델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체제 확대와 개방을 요청하였다.

“우리가 협동조합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최대화하여 유럽 경제 체제에 도입시키기 원한다면 EU는 그 회원국들이 각자의 협동조합 제정법이 목적에 합

당한지, 오랜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억제하는 것이 아닌 성장을 장려하는 것인지 확인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폴린 그린 회장은 폴란드 해변 리조트에서 EU 장관들과 ‘경쟁력’을 주제로 가진 비공식 모임에서 위와 같이 제안하였다.

협동조합 사업은 이미 유럽 경제 속에서 성장과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한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더 발전된 정책방안들을 수립한다면,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이 지닌 연대의 가치, 자발성 그리고 민주성을 가지고 EU를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폴린 그린 회장은 EU 각료회의 회의에 초청된 최초의 협동조합 섹터 대표가 되었다. 폴린 그린 회장은 유럽 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EU는 첫 번째로 협동조합이 유럽 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유럽 경제가 사업 구조의 다양성 확대에 의해 강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유럽 내 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재정적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Global News Hub에 참여가 이어지다

ICA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Global News Hub 뉴스 서비스가 많은 단체들과 국제 협동조합 섹터 내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thenews.coop 온라인 편집장 Anthony Murray는 Global News Hub 뉴스 서비스에 대해 “풍성한 멀티미디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협동조합들이 컨퍼런스, 연설 그리고 광고 등의 비디오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비디오 서버를 개설하였다”고 설명하며, “또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오디오 비디오 팟캐스트들과 자신들의 행사 사진 슬라이드 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그 다양한 기능을 설

명하였다.

Global News Hub는 또한 공식 문서들의 포털 사이트로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 포털 사이트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회의, 연차보고서, 연설문 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문서들,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정책 문서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들은 허브만의 ‘맞춤 편집 시스템’을 사용하여 손수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들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자동으로 자료들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된다.

협동조합 이해 증진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들

“G. J. 홀리요크가 로치데일 선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냈던 것처럼 교육은 협동조합 운동의 생명력이다. 이는 협동조합 세계 여러 나라 연구자들이 함께 발전시켜온 그들의 중심 역할이며 앞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ICA 협동조합 연구 위원회 의장 Lou Hammond Ketilson는 8월24일부터 27일까지 핀란드 동부 사이마 호수 근처 Mikkeli에서 진행될 ICA 국제 연구 컨퍼런스를 위한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를 위한 UN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협동조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Dr. Hammond Ketilson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리더십, 운영 구조, 여러 다양한 활동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들 그리고 사업 방식으로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내야만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상호 부조를 통한 자립과 사회 정책 개혁을 촉진하는 일인 것 또한 알려내야 할 핵심사항이다.”

<2011 ~ 2012년 ICA의 주요 일정>

2011년		
10월	26~28일	ICMIF(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정기모임(격년),도쿄(일본) www.icmif.org
	31일(변경가능)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 공식 선언, UN 본부, 뉴욕(미국)
11월	1~2일	국제협동조합의 해 선언과 관련한 ICA활동, 뉴욕(미국)
	14~18일	ICA총회, 칸쿤(멕시코)
12월	21일	영국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언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1월	20일	협동조합 국제회의(에티오피아)
5월		ICA유럽지역총회
10월	8~11일	2012세계협동조합 정상회의(캐나다)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 Digest 73호 및 ICA eDigest 창간호(5월)) 

행복
행복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 일반부문 -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위대한 생산
- 청소년부문 - 내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나는 교사다. 올해로 4년차, 꽤 적응할 때도 되었으나 여전히 아이들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좌충우돌 중학교 교사이기도 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고, 수업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반쯤 풀린 눈으로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윤리적 소비 공모전 홍보물을 보았다. 읽다 보니 점점 동공이 확장되며, 입가에 스르르 웃음이 번지는 나를 발견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는 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유치함과 무례함에 크게 좌절했던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물론 자랑거리가 있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음을 미리 전제하는 바이다.

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계발활동이라고 하는 CA(Club Activity)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양한 반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3월초 무슨 반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윤리적 소비(착한 소비) 관련된 반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수업 시간에 가르쳤으니 대략 어떤 반인지 알 것이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으니 많은 학생이 올 것이다.’, ‘괜찮은 학생들이 모이면 기부도 하고, 손뜨개 모자랑 아우인형도 만들어 제3세계에 보내야지.’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멋지게 계발활동반을 개설했다. ‘사회공헌반!’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이름이었다. 드디어 토요일 계발활동 조직하는 날,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떡하지?’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출근을 했다. 난... 앞으로 닥칠 불운의 기운을 그때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2교시가 되자, 학생들이 원하는 반으로 이동하고 나는 교실에서 잔뜩 기대하고 학생들을 기다렸다. 5분이 지났다. 그리고 또 5분이 지났다. 그리고 또 5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옆 반은 시끌벅적 난리다. 사회공헌반이 이렇게 최후를 맞

는구나…. 좌절하고 있을 무렵 3명의 아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려는 순간, 아이들 말했다. 제과제빵반을 하고 싶었는데 남자라서 잘렸다고….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왔다고…. 사회적 약자와 제3세계에 관심이 많고 뭔가 실천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간지나는 사회공헌반을 만들겠다는 나의 야심찬 계획은 이렇게 사라졌다.

3명의 아이들은 자신들밖에 없음을 깨닫고 갑자기 180도 돌변하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었으면 사회공헌반은 사라졌을 것이다”라며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아이들을 모으겠다고 복도로 우르르 나가 버리더니 아직 반을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향해 여기로 오라고 성질을 잔뜩 낸다. 굴욕이다. 더 굴욕인 것은 그러한 반(?)협박을 받고서도 끝내 오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주관적으로) 역겹의 시간이 지난 후, 정말 여러 반에 끼지 못한 아이들이 마지못해 나의 교실로 찾아왔다. 그렇게 하여 사회공헌반이 탄생하였다. 인원은 10명.(인원만큼은 참 환상적이다. —.—) 100% 오갈 곳이 없어서 온 낙오자들로 구성된 10명이다. 인원이 확정된 후,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사회공헌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였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난 과감히 삭제했다. 학생의 눈높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1년 동안 기부도 하고, 인형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자고. 반응은 썰렁하다.

한 아이가 묻는다.

“뭘 기부해요?”

“음… 입지 않는 옷이나 읽지 않는 책 같은 거를 가져오면 되지.”

“아이, 귀찮은데… 근데 돈 줘요?”

약간 폭발할 뻔 했다. 다른 아이가 묻는다.

“인형을 왜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거야. 인형을 보내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비용이 마련될 거야.”

“에이 거짓말….”

“ 쌤, 그냥 그 나라 우리가 가요….”

“가요! 가요!”

“와… 우리 아프리카 간다!”

이것들이… 정말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다. 그런 무지막지한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내가 사회공헌반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멍 때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를 불러 정신을 차려보니 종소리가 났다며 집에 가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래 가거라, 이놈들아.’

스펙터클하고 감동 그자체인 1년 치의 야심찬 계발활동 계획을 접고 결단을 내렸다. 3·4월달 계발활동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을 단합할 수 있도록 가볍게 화합의 장을 만들고 아이들 상황에 따라 운영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총 8번의 계발활동 중에 마지막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우당탕탕·우왕좌왕·좌충우돌 사회공헌반은 이렇게 출발했다. 이름값을 못해서 지금도 약간 미안하긴 하다. 이제부터 나의 자랑거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볼까 한다.

5월이 되면서 아이들은 내심 사회공헌반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수업시간에도 뜬금없이 손을 들더니 이번에는 어디 가냐고 묻는다. 2번의 계발활동을 통해 이미 아이들이 사회공헌의 개념은 이해했기에 이번에는 과감히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을 5월의 미션으로 정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출동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불만 작렬할 수 있고, 짜증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장애를 견디기로 나 혼자 사명감을 불태우며 이 날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준비물은 집에서 입지 않는 옷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주었다. 계발활동 전날, 다음 날 있을 아이들의 엄청난 봉기에 대비하여 ‘컨디션 조절’이라는 위대한 목적 하에 일찍 누웠다.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밤 12시 좀 안되어 ‘딱’소리를 내며 문자가 온다. 사회공헌반 형준이다. 보통 이 시간에 문자가 오면 광분하는데 이번엔 광분이 아닌 감동이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다. “ 쌤, 옷 말고 내일 안보는 책 가져가도 되요?” “Yes! Yes! Yes! 물론이지, 형준아~ 너 참 멋지다”라고 답문을 최대한 성의껏 보낸다. 웃는 이모티콘의 답문이 온다. 그래, 이거다!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뭔가를 느낀다면 성공이다!!

계발활동 당일!! 집합시간은 오전 10시, 집합장소는 종각역 내에 있는 서점이다. 사회공헌반의 말쑥꾸러기들은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다. 늦게 오면 버리겠다고 엄포를 부리면, 갑자기 사랑한다며 문자를 보내고 난리법석을 떠는 미워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서점 입구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다. 어머니, 말쑥꾸러기 중 절반이 이미 도착해서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울고, 웃는 어리버리 교사인 나에게 이 상황은 거의 휴먼드라마 수준이다. 아무튼 신기하게 8명의 아이들이 집합시간보다 많이 늦지 않았다.(2명은 아파서 결석을 했다.) 게다가 책을 가져온다는 형준이 말고도 약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옷, 책, 인형 등을 한 가득 가져왔다. 언빌리버블!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니? 오늘 계발활동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성공이다!!! 아름다운 가게에 들어가기 전, 가게 앞 벤치에서 가져 온 프린트물로 윤리적 소비의 뜻, 아름다운 가게의 취지, 기부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꽤 열심히 듣는 눈치이다. 약간의 설명이 끝나고 기증함에 가져온 물건을 넣었다. 인증샷은 필수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산만한 교사와 간지 나는 포즈를 취해 주시는 8명의 아이들, 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무리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본다. 그 시선이 꽤 좋다.

기증을 한 뒤 가게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구경질에 한껏 열을 올리는 아이들. 심지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런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며 샤우팅 하더니 이제는 또 뭔가를 고르느라 정신없다. 짝을 지어 여자아이들은 가방과 옷을 매의 눈으로 스캔한다. 한 명은 아빠 준다고 와이셔츠를 고르고, 한 명은 형 준다고 열쇠고리를, 또 한 명은 공부한다고 영어로 된 소설책을 만지작거린다. 사진 찍기 굉장히 좋아하는 나를 잘 아는 작년 우리 반 승훈이는 삼각대를 사라고 안내까지 해 준다. 이렇게 한참을 물건 보느라 정신없는데 사회공헌반의 귀염둥이 여라가 말한다. “선생님, 여기 아기용품 있는데 음악선생님한테 선물하면 안 되나요?”그러자 옆의 아이가 거든다. “국어선생님한테도 하면 안 될까요?”참고로 음악선생님과 국어선생님은 임신 중이다. 와우!!! 두 번째 언빌리버블!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니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가슴은 한없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용품 2개와 카드를 샀다. 그

리고 밖에 나와 벤치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지를 남겼다. 작년에 국어선생님이 담임이었던 아이들 2명은 작년에 저질렀던 말썽들을 떠올리며 내심 미안해하는 눈치다. 웅기종기 모여서 카드 쓰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지켜본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기부체험이 오늘의 계발활동 목표였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윤리적 소비까지 체험한 것이다. 그것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에게 임신하셔서 힘드실 거라는, 예쁜 아기 낳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오늘의 일정이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분식집에서 갔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종알종알 수다 삼매경이다. 가끔 부끄러운 행동을 하여 나까지 얼굴을 붉게 만드는 철없는 아이들이 오늘은 천사가 따로 없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덩달아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분식집은 우리 9명의 목소리로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라. 헤어지는 길에 아이들이 다음 달에 또 오자고 한다. 집에 기부할 거 많다고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5월의 어느 토요일, 5시간동안 난 너무나 큰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 손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산 물건들, 그리고 내 어깨에 걸쳐 있는 삼각대까지 소소한 것 하나 놓치기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싶다. 가끔 초등학생과 같은 행동을 보여서 나에게 혼도 많이 났던 아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다 큰 것 같아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한쪽은 가르치고, 다른 한쪽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다. 서로 배워가는 줄탁동시(掬탁同時)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다. 사회공헌. 뜻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단어이다. 사회공헌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는 나 역시도 실천하기 어려우니 말이다. 성인인 나도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데 어리고 어린 중학교 3학년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아이들이 한번 기부해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물건을 소비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공헌반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닐까? 시작은 조금 어설프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준 10명의 아이들 여라, 지혜, 지수, 혜정, 승훈, 영규, 형준, 연웅, 노원, 인호야 고마워! 남은 3번의 계발활동 멋지게 마무리 하자! 언제나 화이팅!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그래,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오랜만에 딸아이의 집에 놀러 오신 친정엄마의 두 손엔 무거운 짐들이 잔뜩 있습니다. 집도 멀고 무거우시니 편히 몸만 오시라 여러 번 당부도 드려 보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다 큰 자식에게도 무엇하나를 더 주지 못하여 안달이신가 봅니다. 친정집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들과 손수 땀아 오신 고춧가루가 제 몸을 지체 못하고 보따리 밖으로 뺄죽 솟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아이들의 뭉이라며 축구공과 재생종이 연필을 꺼내어 놓으십니다.

얼마 전엔 히말라야에서 생산한 커피라며 제게 안겨주시더니 오늘은 아이들의 학용품까지 사오시니 이상스럽습니다. 커피와 학용품이라면 집 앞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선물에 더할 나위 없이 신이 난 모양이지만 저는 가격표부터 우선 살펴봅니다. 제품의 질이고 양이고를 떠나 싼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평생을 근검, 절약을 좌우명처럼 알고 살아오신 엄마에게 배운 버릇인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별로 싸지도 않은데 왜 사오셨어요? 아이들 것 사오시지 마시고 엄마 가을 옷이라도 한 벌 해 입으세요.”

딸아이의 볼멘소리에 엄마는 그제야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게 바로 공정무역 상품이라 안카나! 니는 그거 모르나 공정무역 상품! 정직하고 착하게 만들고 파는 거니 품질도 좋고 기분도 좋다 안카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건디 쪼매 비싸도 얼마들한테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갈차 주고 얼마나 좋노?”

정직하고 착한 제품이란 엄마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커다란 밀짚모자 하나에 의지하시며 땡볕 아래 밭을 매고 논을 갈던 아버지와 어머니. 25년 전 가난은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병을 얻으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논 몇 마지기를 야금야금 팔아 치워야 했고, 동생의 병원비가 급할 때면 아직도 자라지도 않은 농작물을 팔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땅을 사면 안 된다는디, 왜 있는 사람들이 더한겨? 가난이 죄지, 죄야.”

제 대학교 입학금에 쓸 거라며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셨던 마지막 논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농작물을 수확하며 울분을 토하던 아버지의 서글픈 눈망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땀은 우리를 풍족하고 잘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지고 더 부자인 이들의 부른 배를 더 부르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을 뿐.

어썸 엄마도 옛날의 우리처럼 피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까워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정무역이 활발해 지고 있고, 공정무역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구입하는 공정무역 제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엄마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정당한 거래로 이루어진 공정무역 상품. 가난한 이도 자신의 피와 땀의 대가를 거둘 수 있고, 희망 찬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는 상품이라면 그 것만으로도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는 가난하고 못 살았던 설움을 알기에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커피 한줌, 재생용지로 만든 학용품 하나는, 우리에게겐 그저 쓰면 사라져 버리는 한낱 소비재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엔 아마 그들의 가족과 고된 삶에 빛이 되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아껴 쓰시고, 재활용품도 새 제품처럼 사용하시는 억척스런 우리 엄마. 누군가는 가난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습관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언제나 편리함보다 환경을 또 자신만큼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소비하며 살아오신 엄마의 떳떳함과 정직함은 윤리적 소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작은 돈 하나 허투루 쓰시는 법 없는 우리 어머니가 사 오신 공정무역 상품. 새

로운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면 연세 많으셔서, 구닥다리라서 엄마는 모를 거라고 그냥 넘긴 적도 많았는데, 똑똑한 척만 하는 딸보다 먼저 현명한 엄마는 이미 공정무역 상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품질 좋고 우수한 제품인 것은 물론 누군가의 희망에 불씨가 되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따스해져 옴을 느낍니다.

작은 소비가, 올바른 소비가 정당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는 소중한 일임을 다방면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며 깨달아 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정무역 상품이 또 없나 오늘은 시간을 내어 엄마와 쇼핑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누군가를 배려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에 윤리적 소비는 기분 좋은 소비임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날아 주는 가장 위대한 생산임을 저도 꼭 우리 엄마처럼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최신형 전자제품이다”

이것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공부도 잘하는 이른바 모범학생이었던 나의 과거 인생 모토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목표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늘 그랬듯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합격의 결과를 얻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대견해 하셨고, 나는 당당히 새로운 휴대전화를 요구하였다. 이런 식의 포상으로 거침없이 바꿔 나간 휴대전화가 벌써 세 번째였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최신형 전자사전, 노트북, 시계, MP3 등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이유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능한 모든 전자 제품들을 최신 것으로 교체하고 한껏 들뜬 어느 날, 나는 우연히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손에 허술한 꼬챙이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모래벌판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주변 곳곳에 검은 불길이 보였고 카메라에 비친 쓰레기들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등 모두 전자제품들이었다. 약국에 슈퍼마켓에 흔하게 널려있는 마스크나 장갑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마땅히 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검은 연기 속을 헤집고 있었다. 마치 내가 초등학교 시절 소풍가서 곤충채집을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들이었다.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제품은 물론 각종 디지털 멀티미디어 같은 소형 제품 등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이른바 ‘전자쓰레기(e-Waste)’가 된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5천만톤에 이르는 전자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선진국 70%에서 배출하는 전자쓰레기가 ‘재활용’, ‘자선 기부’라는 명목 아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은 마스크나 장갑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기 판을 연탄불로 구워 부품을 떼 내고 전선피복을 불에 그을려 구리를 얻는 등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전자쓰레기들을 마지막으로 파헤치던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동자들은 그저 해맑았다.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던 나를 쳐다보던 어머니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날의 내 모습. 솔직히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실체였다. 그 때까지는 한 번도 나의 과소비가 저 먼 곳의 땅을 오염시키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몸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 날 이후, 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선진국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 읽어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이 급격히 짧아졌다. 이것은 쓸 수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세련된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제품을 과감히 버리는 소비자와, 무한경쟁 속에서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어떻게든 신제품을 먼저 출시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생산자의 공동 노력 때문일 것이다. 전자제품은 신제품을 사는 순간 버려지고, 버려지는 순간 폐기물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휴대전화를 약 1,600만 대 생산하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휴대전화는 500만 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교육받고 공부하여 이를 주제로 한 각종 경시대회에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며 상을 타내고 부상으로 부모님께 신제품을 얻어냈던 지난 시절을 떠올려본다. 그 때 새로운 휴대전화를 받고 이전의 휴대전화를 어디에, 어떻게 버렸는지 아무 기억도 해 낼 수가 없다. 현재 내 손에 들어온 신제품만 눈에 보일 뿐, 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제품은 이미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휴대전화는 각종 중금속과 희귀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중요한 자원도 잃게 된다는 사실은 내게는 그저 경시대회 상을 목표로 시사 공부하려고 읽었던 신문 기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글자’였을 뿐이다.

우리학교는 기숙사 학교라 전교생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친구 간에

서로 많은 일들을 나누게 된다. 강원도 산 중턱에 집이 있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진욱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새 참고서를 사본 적이 없고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을 사본 적도 없다고 한다. 내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전자제품 없이도 이렇게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이제까지 경쟁하듯 휴대전화를 바꿔 나갔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내 주변의 전부라고 믿었기에 늘 나도 아무 망설임 없이 신제품들을 소비해 왔는데 진욱이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늘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외치며 누려왔던 물질적 풍요로움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글이 아니라 현실로 만나게 된 느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오염을 만드는 나쁜 소비자’와 ‘오염을 줄이는 착한 소비자’로 나눈다면 검은 연기의 쓰레기더미 속을 너무도 능숙하게 오가는 아프리카 소년들과, 부족한 환경에서 하나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느리지만 자립적으로 해결해 가는 진욱이, 나는 이들과 함께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을 하면서도 나는 솔직히 넘쳐나는 멋진 신제품들을 모두 외면하고 구형 제품만을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장 쓰레기의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과학적인 전문 연구를 해 낼 수도 없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시작해 보고자 결심했다. 우선, 반드시 필요할 때 구매하고, 꼭 버려야 할 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폐기하는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려 보았다. 그동안 가나의 13살 소년에게 내 용돈을 나누어 후원금을 보내면서 세상을 위해서 너무도 쉽고 간단한 실천만을 해왔던 것 같아 새삼 창피했다. 아마 그 돈은 지금까지 내가 버린 물건들의 처리비용으로도 모자랐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윤리적 생산’ 역시 윤리적 소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일

지라도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제품인증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신제품으로 인증되기 위한 디자인과 기능 개선의 기준을 마련해 남발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최신형 전자제품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최신형 전자제품들을 올바르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부할 것이다. 우리가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만으로는 소비에 대한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내가 구매한 물건들이 안전하게 폐기 될 때까지 나의 소비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버릴 수 있을 때 올바르게 버리는 책임감 있는 소비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지키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윤리적 소비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식품안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로 이어졌으며, 농업 지킴은 곧 환경 지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기준을 바꾸는 활동과 사업, iCOOP생협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

1.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생협 조합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물품 유통마진이 거의 없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일반가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사)아이쿱(iCOOP)생협연대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회비(조합비)를 내는 대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류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안정이 가능하게 한 우리 생협의 제도입니다.

전화가입 : 1577-0014

인터넷 가입 : <http://www.icoop.or.kr>로 접속하여 상단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누르시거나 <http://www.icoop.or.kr/coopmall>로 접속 후 이용안내 → [조합원 가입신청]을 누르세요.

2. 매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생협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생협물품에 익숙하지 못해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고 일반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협물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주문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조합원께서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이쿱(iCOOP)생협 가입 및 상담 전화 : 1577-0014

자연드림 전국 매장 안내 : 1577-6009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S JOURNAL vol.4 Fall 2011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Welfare societ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

Welfare society movement and Cooperative movement

Seung-il JUNG

Possibility of social economy as strategy implementation

Won-bong JANG

Cooperative movement and Welfare

Hyung-mi KIM

Cooperatives economy raises the necessary capital through the
'advances received' movement

Hang-sik OH

Round-table : Cooperation, Participation and Welfare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